

세미나 자료집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11. 8 (화) 09:30~17:5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 UN SDGs 포럼



김용태 의원실



김세연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AIDEC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rea Citizens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KAS COALITION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협력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016.11. 8 (화) 09:30~17:5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 UN SDGs 포럼



김용태 의원실



김세연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AIDEC
국제개발협력학회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rea Civil Society Foru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CCG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한림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행사일정

09:30-10:00	개회식	진행사회: 김영일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
개회사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환영사	권성동 의원(국회 UN SDGs 포럼 대표)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문영기 KoFID/KCOC 대표	
10:00-11:20	[제1세션]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라운드 테이블)	
사회	손혁상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장, 경희대학교)	
연사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윤현봉 KCOC 사무총장	
11:30-12:40	[제2세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사회	신혜수 위원(유엔사회권위원회)	
발표 1	유엔 SDGs 이행추진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발표 2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 유용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종합토론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2:40-13:40	점심	

13:40-15:00	[제3세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	이성훈 KoFID 국제위원장	
발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한 네가지 쟁점사항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발표 2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종합토론	이철호 비서관(원유철의원실, 새누리당) 김형호 비서관(김용태의원실, 새누리당) 유경선 전) 보좌관 신재은 부장(KCOC 정책센터)	
15:00-15:10	휴식	
15:10-16:30	[제4세션]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사회	김영일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발표 1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 김지영 교수(숭실대학교)	
발표 2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표 3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 · 월드비전 옹호팀장	
종합토론	장혜영 교수(중앙대학교) 김성규 교수(서울대학교)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16:30-16:40	휴식	
16:40-17:50	[제5세션] 유엔 SDGs와 법제교류	
사회	장현식 교수(인천대학교)	
발표 1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 소정수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	
발표 2	유엔 SDGs 이행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대용 팀장(한국개발연구원) 강봉준 대표(한아도시연구소) 김남연 변호사(KOICA)	

목 차

개회사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1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3
환영사	권성동 의원(국회 UN SDGs 포럼 대표)	5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7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9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11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13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15
	문영기 KoFID/KCOC 대표	17

[제1세션]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국회의 역할	21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25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SDGs 이행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31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엔 SDGs 이행과 국회의 역할	39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45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49
윤현봉 KCOC 사무총장	

[제2세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발표1_ 유엔 SDGs 이행추진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자발적국가리뷰(VNRs)와 G20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55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발표2_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 81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종합토론 97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윤경호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세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1_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한 네가지 쟁점사항 111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발표2_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 119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종합토론 129

이철호 비서관(원유철의원실, 새누리당)

김형호 비서관(김용태의원실, 새누리당)

유경선 전) 보좌관

신재은 부장(KCOC 정책센터)

[제4세션]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발표1_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 143

김지영 교수(숭실대학교)

발표2_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157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표3_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179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월드비전 옹호팀장

종합토론	189
------------	-----

장혜영 교수(중앙대학교)

김성규 교수(서울대학교)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제5세션] 유엔 SDGs와 법제교류

발표1_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
--------------------------------	-----

소정수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

발표2_ 유엔 SDGs 이행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211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219
------------	-----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대용 팀장(한국개발연구원)

강봉준 대표(한아도시연구소)

김남연 변호사(KOICA)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주신 유엔 SDGs 포럼 대표 권성동 의원님,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장님, 문영기 KoFID/KCOC 대표님을 비롯한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유엔은 향후 15년 간 전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규범인 유엔 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SDGs는 이전 MDGs와 달리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발전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재원의 측면에서도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적 및 사적 재원도 활용하는 매우 포괄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엔 SDGs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주요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의 통합과 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없이 유엔 SDGs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유엔 SDGs의 체계적인 이행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을 총망라한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유엔 SDGs 시대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실천모델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를 주제로 뜻깊은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20대 첫 번째 정기국회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에 애써주고 계신 권성동, 김용태, 김세연, 권미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과 정책개발에 기여해주고 계신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과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회장님, KoFID/KCOC 문영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0대 국회의 핵심 지향의 하나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기본 방향은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행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향후 15년에 대한 계획입니다만 다음 세대가 열어나갈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발전과 번영의 역사에서 매우 중시되는 사례이기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우리의 번영과 발전은 물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해안이 빛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과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의장 정 세 균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 출신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긴박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시고 준비해 주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그리고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장과 문영기 KoFID/KCOC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UN SDGs 포럼은 지난 2014년 2월 창립하여 국회내에서 유엔 SDGs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미력하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하여, SDGs의 확산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행사를 진행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을 총망라한 훌륭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엔 SDGs는 지난 MDGs와 달리 국내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시여겨지고 있습니다. 유엔 SDGs의 이행에 있어 행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제도화시키는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UN SDGs 포럼은 창립 후부터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입법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셔서 우리나라 SDGs 이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 UN SDGs 포럼 대표, 새누리당 권성동

환영사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지난 15년간 빈곤감소, 교육, 보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사업이며 지난 15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앞으로 15년 동안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입니다.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에 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일자리, 빈곤,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 공동번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과제의 해결은 정부, 국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간 시민단체와 힘을 모았을 때 쉽고 빠르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과 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는 주어진 목표를 이행하고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민과 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것이며 어떻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며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의원 김 용 태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입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국제사회 공통의 약속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제개발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입법과제를 다각도로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를 시의적절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하시는 국회 UN SDGs 포럼과 김용태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사회의 기술적 발전 속도는 기존의 공동체가 이루어놓은 많은 제도가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적 발전의 속도가 일부에 집중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포함한 국가간 대륙간 격차가 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협할 정도에 이른다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세계가 함께 지속가능발전가능목표와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국가별로 이행을 위한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ODA사업 확대 중심으로 빈곤국과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UN SDGs가 지향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하고자 노력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이행이라는 가치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 개최되는 오늘의 세미나는 입법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일뿐만 아니라 SDGs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시는 다양한 의견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의원 김 세 연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유엔 SDGs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SDGs의 17개 독자 과제 중 5번째에 있는 목표인 “성 평등과 여성·여아에 대한 권한 강화”에 주목합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한국의 성평등 현실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여성 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년째 OECD 국가 중 남녀의 임금격차는 1위를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300명 중 51명 뿐이며, 정부의 부처에서도 높은 지위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양적인 평등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남-녀 간의 불평등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처럼 소득, 계층, 장애 등과 연계되어 다층적인 불평등 문제로 나타납니다.

관료 사회, 정치권의 “젠더” 마인드가 시급한 때입니다. 정책 결정권자, 시행자들의 젠더 인식 결여는 모든 영역의 ‘차별’종식이라는 SDGs의 “성평등” 목표 실현에 장애가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질 유엔 SDGs 관한 쟁점과 입법과제들의 논의로 국회의원 및 정당의 SDGs에 대한 관심과 공유가 촉진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외·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나라가 공동노력을 약속한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회의원 권 미 혁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행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제20대 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참석해 주시고, 권성동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이 이 포럼을 공동개최하셨습니다. 또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그리고 문영기 KoFID/KCOC 대표님과 국제개발협력학회가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각 기관 및 단체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채택된 유엔 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을 위한 주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이 우리의 실천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2조 5천억원이 넘는 대외원조와 더불어 국내의 발전분야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서의 SDGs는 정책감시, 조정,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가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국회 UN SDGs 포럼과 홀룡하신 의원님, 그리고 관련 입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동참하고 있어 우리나라 유엔 SDGs 이행에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도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께서 홀룡한 논의를 진행해 주셔서 SDGs 이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손 혁 상**

환영사

오늘 국회 UN SDGs포럼, 김용태 의원실, 김세연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임성호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문영기 KoFID/KCOC 대표님, 권성동 국회 UN SDGs포럼 대표님,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적으로 그 이행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법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SDGs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행정책과 법제적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는 21세기 첫 15년 동안 인간개발과 사회발전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에서 경제개발과 환경 지속가능성,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대부분은 국내적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SDGs에 대한 국내 이행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우리의 국내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 학계, 연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 단계 성숙한 사회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임성호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문영기 KoFID/KCOC 대표님, 권성동 국회 UN SDGs포럼 대표님,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한국법제연구원장 이 익 현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공동대표 문영기입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SDGs 이행을 위한 향후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가 마련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신 국회 유엔
SDGs 포럼 권성동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님,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회장님 그리고 한국국제협력
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SDGs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Inclusive)이며, 이행의 주체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된다는 점
에서 보편적인(Universal) 목표입니다. 또한 변화를 넘어 체제와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
다는 의미에서 변혁적인(Transformative) 목표입니다.

SDG목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어
떤 부분에서 변혁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SDG목표는 우리 과거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역사
를 고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 해결에 더 힘을 기울여야함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 전체의 노력으로 확산하여야만 모든 미래세대에게 희망
이 있는 세상을 이어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SDGs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보장되는 포괄
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화와 인권, 환경, 여성, 아동, 장애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과의 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국회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연
구기관과 함께 SDGs관련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대 국회가 지구와 사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SDGs 이행을 위한 행동을 개시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8.

KCOC 회장 / KoFID 공동대표 문 영 기

[제1세션]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사회: 손혁상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장, 경희대학교)

연사: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윤현봉 KCOC 사무총장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국회의 역할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국회의 역할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 모두 발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 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한국 정부 내 이행체계와 전략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 이에 국회 내에서 유엔 SDGs 세미나를 개최, 향후 과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함.

○ 포괄적인 SDGs 이행체계 마련 필요

SDGs에 합의한 유엔 회원국들은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 과제로 맞이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스위스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콜롬비아, 중국, 베네수엘라, 조지아 등 2016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 자발적 국별 평가 보고서 제출에 참여한 국가들)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고 있음. 특히 핀란드는 총리실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조정국을 운영 중이고, 일본의 경우 범정부간 SDGs 태스크포스인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본부를 만들었다고 함. (추진본부 본부장에 아베신조 총리가, 내각 관방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부분부장을 맡고 법무부, 재무부, 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내각을 구성하는 모든 부처가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 중)

한국의 경우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됨. 현행법상 SDGs의 국내적 이행은 환경부가, 국제적 이행은 외교부가 담당하게 됨.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 대한 포괄적 목표를 담고 있는데 현 체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제를 균형감 있게 다루기 힘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국회 세미나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SDGs의 국내외 이행 체계와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의제21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음. 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자체와 시민사회 주도로 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음.

○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국회는 SDGs 이행의 주체이자 촉진자가 되어야 함. SDGs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2~3번 더 한국정부의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보고서 제출이 있을 예정인데 국회 차원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논의되는 구조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국회차원의 역량강화도 필요함.

○ 개발재원의 조성과 민간의 역할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개발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유엔은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4.5조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계한바 있음. 이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서 합의한 GNI대비 0.7%를 ODA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부족한 금액임.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15년까지 ODA 예산을 GNI대비 0.25%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고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목표 수정을 한 상황임. 이에 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에서도 다양한 개발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리

SDGs의 기본정신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임 (No one is left behind)’임. 그 이행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여성, 장애, 노인, 청년과 아동 등의 주제별 그룹을 포함,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특히 시민사회, 기업,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SDGs 달성의 핵심 요소일 것임.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1.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배경 및 내용

- 2015년 9월에 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의 3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동안 UN과 회원국 정부, UN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 연구소, 언론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 이런 절차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계공통의 고민과 노력 목표를 도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약속**
 - 2000년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개발협력의 목표에 대해 공동의 약속을 한 최초의 사례로, 실행이후 최빈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5세 미만의 아동이 사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목표가 제한적이고 유엔 내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등 도출과정의 한계가 있었음.
 - 또,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빈곤을 소득이 적은 국가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도 있었음.
- 그렇게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이나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을 함께 해결코자 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 ‘자신’의 문제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되어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발전의 결과를 누릴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2. 우리나라의 적극적 이행참여 이끌기 위해 필요한 세계시민의식

- 이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한 사람의 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만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만큼 여러 분야의 유엔기구, 각 나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학교, 기업이 개별적 그리고 공동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15년 유엔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위한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보다 나은 소녀들의 삶(Better Life for Girls)’이라는 활동을 공식 선언하는 한편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등 ODA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DA사업과정에서 SDGs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보다 나은 소녀들의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Safe Life for All Initiative)’,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등 개발협력 주요구상을 제기하고, 빈곤퇴치관련 구체적 이행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평가보고서에 대해 국제원조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구체성,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문제제기 및 입법화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세계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3. 교육의 변화 이끌어야

- 세계시민교육은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지구촌의 빈곤문제, 기후변화, 난민문제, 인종 및 각종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음.
- SDGs의 4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세부목표에도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난 달(10월 24일~25일) 우리나라에서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교육 : 약속에서 실천으로」가 최초로 개최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의 취지에 공감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양성 방향의 교육개혁 등 다양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계획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임. 그렇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의 변화 속에서 산업과 경제, 언어·시·공간적 경계, 경제 등 기존의 당연한 관념들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공유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견함.
- 이것이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조속히 갖추어야 할 이유이며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필수 과제임.
- 따라서 산업화시대 획일적 교육은 이미 그 종기를 넘어섰음을 직시하고, 기존의 교육 기득권을 벗어나 철저히 공급자 중심,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의 방향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SDGs 이행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SDGs 이행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년) 의 의미

-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넘어 사회개발로까지 타켓을 확장
 - 모든 사람, 모든 국가, 국가 내, 국가 간 소외나 차별이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93개국이 공동노력을 약속한 것은 엄청난 진전(보편주의)
- 여전히 빈곤종식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의와 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를 목표와 세부목표에서 구체화했다는 점
 - *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화
 - MDGs가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SDGs는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파괴와 지속가능성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 중진국의 빈곤층에 대한 무관심/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 과제로 설정하는 등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241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한 것
- 이 목표와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UN 고위급정치포럼(HLPE)을 감독기구로 하여, 매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4년 마다 유엔 총회 주관으로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더 큰 진전
-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거버넌스”의 실행을 강조,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년)와 성평등

- 17개 SDGs 독자 과제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분야는 독자 목표 5번째인 “성 평등과 여성·여아에 대한 권한 강화”임

- 일본군‘위안부’문제, 강남역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 여성, 장애여성
에 대한 차별 등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듯이
 - 성차별은 단순한 남-녀 간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계층, 소득, 지역, 인종, 민족, 성
(sexuality), 나이, 장애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다층적인 불평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SDGs가 지향하는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기(Leave no one behind)’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남녀평등 만이 아니라
 - 성차별을 유지, 온존시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
 -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 성적·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강화, 국가·사회·기업
등의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참여(최소 30%)
 - 그리고 빈곤, 보건, 교육,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위치와 집단에 속한
성 간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범 분야적 다층적 목표와 세부 지표가 필요함
- 이런 관점에서 SDGs의 5번째 독자 목표인 “성 평등과 여성·여아에 대한 역량강화”는
MDGs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다층적 불평등에 주목, 성차별의 구조
개선, 의사결정 참여까지를 포괄하여
 - “성평등과 여성, 소녀에 대한 역량강화”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이슈로 설정,
다른 10개 독자 목표의 세부목표에도 포함한 “이중구조”는 엄청난 진전

□ SDGs와 “성평등과 여성, 소녀에 대한 역량강화”목표 실현을 위한 국회의 과제

- 국회의원 및 정당의 개별 국가와 전 세계 발전 방향의 규범이 되고 있는 SDGs에 대한 관
심과 공유
- 정부의 SDGs 과제 추진 체계,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독자적 이행 점검 등
 -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등의 복원
 - 기 존재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기본계획의 SDGs 부합성 및 개선과제 점검
 - 관련 시민사회, 국민 소통, 국제 의원외교 활동 강화 등
- 관료 사회, 정치권의 “젠더”마인드 강화 시급
 - 정책 결정권자들의 젠더인식 결여는 모든 영역의 ‘차별’종식이라는 SDGs의 “성평등”

목표 실현에 장애, 국제적 권고 이행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장애

예) 여성가족부장관(2016.10.18.국정감사) 발언과 특정 여성계에 대한 지원 거부

: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구분, 성평등은 동성애를 지지하여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gender를 남녀 간의 숫자적 균형, sexuality의 문제 규정, 성평등기본법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제정, 대전시 조례의 ‘성 소수자 인권 동등 보장 조항 삭제’요구 등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여성가족부 입장		
항 목	내 용	여성가족부 입장
제3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대전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대전시장은 (동성애자의)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양성 평등 기본 법에 선 성소수자 관련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조례가 입법 취지를 벗어났음 -조례를 시정해야 함
제22조 (성소수자 지원)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출처 : 국민일보 2015-08-07 00:10

□ 국내 성 평등 현실과 정책 과제

○ 한국의 성평등 현실

- 여성대통령 시대가 부끄러운 현실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여성 지위

* UNDP의 성불평등 지수 : 2013년 전체 155개국 중 17위 → 2014년 23위로 하락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2015년) : 전체 145개국 중 115위로 최하위권

(기대수명과 문해율 완전평등. 그러나 남녀 임금성비 116위, 추정소득 101위, 관리직 성비 113위, 고등교육 취학률 116위, 출생성비 128위, 장관 성비 130위)

* 15년째 OECD 회원국 1위를 자랑하는 남녀임금격차

* 깔창 생리대 대책 : 핑퐁만 하는 정부, 2017년 예산 반영 “0”원W

-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문제, 50년이 소요된 ‘호주제 폐지’,

“성평등기본법” 대신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불발,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여부 공론화 지연 등

각 정당들의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불이행 등

-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아동 방치, 미혼모 차별과 해외 입양 문제 등

* 병원 이용 기록 없는 영·유아 6315명…정부는 1900명만 실태 조사

* 2014년 기준 13~20세 청소년 피해자의 94.8%(7968명)가 여성

○ 통치권자의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다층적 성주류화 정책 시행, 추진 필요(SDGs 성평등.여성·소녀 역량강화를 국정 과제화 해야)

- 성평등, 여성·소녀 권한 강화없는 저출산 극복 불가능(유럽국가들의 경험) /국가 지속가능성의 위기

□ 국제 사회 기여에서의 과제

○ ODA사업의 성주류화 ; 다양한 정보 수집, 성별 분리통계 체계 구축, 성과측정을 위한 역량강화 시급

* OECD젠더마커 통계 : 코이카의 성주류화 사업 29%(2014) 중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1차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전체의 4%에 불과¹⁾

○ 보건, 교육 중심 탈피, SDGs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력, 평화/안보와 여성, 여성 리더십과 정책결정직 참여 분야 등의 지원 대책 수립, 추진해야

- 또한 MDGs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 분야, 어린이, 노약자, 소수민족, 이민자, 장애인, 농촌지역과 도시 빈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 “코리아에이드,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사업의 전면 개선

한국 자랑질(한국음식체험, 한국문화체험 등), 보건·의료분야 집중 2-3일 진료 후 이동 등 일회성 사업 전면 재고해야

1)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2015.7) 중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정금나)

〈참고자료〉

〈표 5.2〉 SDGs 목표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Goal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5.1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5.2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성 착취 및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및 여성 성기절제 등 모든 악습 철폐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 그리고 가구와 가족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한 무급 및 가사노동 가치 인정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와 북경 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성적, 재생산 보건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 보장
	5.a 여성에게 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원, 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 및 자연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개혁 수행
	5.b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ICT를 포함한 기술사용의 확대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강제력 있는 법안의 채택과 강화

출처: Open Working Group(2014)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출처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7,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코리아 정금나 발표문 중

〈표 5.3〉 SDGs 10개 목표 내에 범분야 이슈로 반영된 젠더 세부목표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Goal 1. 빈곤퇴치	1.2 2013년까지 빈곤한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어린이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Goal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2.2 2030년까지 모든 영양결핍 해소 및 청소년기 여성, 산모, 수유기 여성 및 노인의 영양적 필요에 대처
	2.3 2030년까지 땅, 생산자원, 지식, 재정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비농업 고용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원주민, 가족농, 유목민, 어부 등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두 배 증가
Goal 3. 보건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 사망률을 100,000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Goal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들이 무상의 평등하고 양질의 초등, 중등교육을 완료
	4.2 2030년까지 모든 남녀 유아들이 적절한 돌봄과 취학전 교육을 통해 초등교육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질의 기술, 직업,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격차를 철폐하고 모든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 원주민, 아동 등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4.6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청년 및 X%의 성인의 문해력/수학력 확보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 양성평등, 비폭력, 글로벌시민권, 다양성 등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
	4.a 아동, 장애, 성인지적 교육시설의 건설 및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제공
Goal 6. 물과 위생	6.3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변 척결,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촉구
Goal 8. 경제성장과 일자리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기회 및 일다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등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보장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불안정 고용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및 노동권 보호
Goal 10. 불평등 해소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어떠한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부여
Goal 11. 도시	11.2 2030년까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확대 및 도로안전 개선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고 접근성 높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제공
	11.7 2030년까지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성 좋은 공공녹지 공간을 제공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13.b LDCs의 여성, 청년, 지방의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경영을 위한 역량강화 매커니즘 설립
Goal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18 2020년까지 LDCs와 SIDS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국가적 특성에 따른 소득수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지역 등으로 분리된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역량강화 증진

출처: Open Working Group(2014) 자료 저자 재구성

출처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7,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코리아 정금나 발표문 중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유엔 SDGs 이행과 국회의 역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엔 **SDGs** 이행과 국회의 역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I

SDGs 관련 국회 역할이 큰 이유

- ▶ 지구화(globalization), 세방화(glocalization)의 심화
 - ▶ 국가 간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심화되고 global-national-local 영역들 간의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SDGs의 실천에 국회의 역할이 필수화됨
- ▶ 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의회 영역의 확장
 - ▶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회의 관여와 영향력이 증대됨
- ▶ 유엔 MDGs의 역사적 교훈
 - ▶ MDGs가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각국 의회의 참여와 협조 부족이 꼽힘

▶ 2

SDGs 관련 국회의 원칙·방향

- ▶ 선제적 적극성
 - ▶ SDGs는 MDGs에 비해 국내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더욱 앞장 설 필요
- ▶ 포괄성, 종합성, 다면성
 - ▶ SDGs 내용은 정책영역 전반을 다루므로 국회의 관련 활동도 포괄성, 종합성, 다면성을 띠어야 함
- ▶ 포용성, 투명성
 - ▶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두루 포용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켜야
- ▶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국민의 참여성
 - ▶ 시민사회의 협조와 국민의 실천이 중요하므로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 ▶ 법·제도와 의식·문화·규범의 조화성
 - ▶ 법·제도 차원과 의식·문화·규범 차원 간의 조화·균형 필요

▶ 3

국회의 역할: 3가지 영역

- ▶ 필요한 입법 조치
 - ▶ 법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 성인지분석, 규제분석, 예산분석 등과 아울러 SDGs분석에 대한 고려 필요
- ▶ 적절한 행정부 감시·감독
 - ▶ 행정부의 각 부처의 SDGs 추진현황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공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 ▶ 사회 담론·여론 조성
 - ▶ SDGs의 성공적 추진은 사회 전반의 지지와 협조를 요구하므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하고 적절한 사회담론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쪽으로의 노력 필요

▶ 4

국회 역할수행을 위한 수단

- ▶ 국회 내부 조직 정비
 - ▶ 국회특별위원회, 의원연구모임, TFT(범사무처 차원), 자문위원회(국회의장 직속) 등의 구성 및 상호 협업체제 구축
 - ▶ 입법지원기구들의 활용: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 ▶ 국회 외부 네트워크 구축
 - ▶ SDGs의 각 분야별로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국제사회와의 협력: 유엔 및 각 분야별 국제기구 외에 IPU, MIKTA 국회의장회의,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협력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5

국회의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방법

- ▶ 지역구 이익과의 연관성 강조
 - ▶ SDGs 내용별로 개별 지역구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해당 의원들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요청
- ▶ 각 정책영역과의 연관성 강조
 - ▶ SDGs가 각 정책영역과 갖는 연관성을 검토해 관련 위원회 및 의원들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요청
- ▶ 개헌 논의 시 헌법조항으로의 반영
 - ▶ 만약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가능발전,” “환경권” 등을 비롯한 SDGs 관련 핵심 개념이 헌법조항에 반영된다면 큰 추진력이 생길 것임

▶ 6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I. 들어가며

2016년 올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개발도상국 위주의 빈곤감소 등의 지원체계인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범위의 전영역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전환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나라에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우리 사회에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입법의 중심인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II. 법률 전 영역의 방향성이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은 구축하고 있다. 다만,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문제, 농업진흥, 복지문제, 교육문제, 양성평등 문제, 보건관련 문제, 에너지 문제, 고용문제, 산업화 문제, 불평등 문제, 도시 및 주거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기후변화 문제, 해양문제, 지구 환경 문제, 정의사회 구현 문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문제 등 우리 생활 전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지만 법안을 제안, 심의, 확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국회가 담당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또한 필요하므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나라에서 확산될 것인가의 성패가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해야 할 몇 가지의 실행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의 네트워크는 물론 한국 법제구원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등과도 공조를 하여, 각 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입법 변화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의 관련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입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법률 이론 및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에 국회, 정부 차원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회 중심의 기업-민간-청년 네트워크인 UN지원 SDGs한국협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국회 UN SDGs 포럼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지원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행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행에 대한 국제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받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 들어가며

20대 국회에서 SDGs의 이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SDGs 이행체계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권미혁 의원님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무적입니다.

○ SDGs 이행 체계 관련

- 지난 7월 유엔 ECOSOC 주관으로 고위급 정치포럼이 개최,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자발적 국별 평가가 있었고 한국 정부도 참여함. 환경부와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의 제시 없이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참여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고 평가한 바 있음.
- SDGs의 성공여부는 시의적절한 이행에 달려있음. 정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 광범위한 협의절차가 필수적임. 현재 정부의 이행체계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포괄적인 목표 이행에 단일 부처가 주축이 되어서는 범정부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SDGs 이행을 위한 의회와 시민사회 역할 :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 SDGs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음. 이는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기도 함. 시민사회는 모니터링과 어드보커시, SDGs 인지제고 캠페인을 지속 해 나갈 예정임. 시민사회 또한 SDGs의 이행 주체이며 보고의 책무가 있음. 특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경우 현장 사업을 통해 SDGs를 이행해야 하며, 개발도상국 시민사회가 SDGs이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

-
- KCOC가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CSO가 양질의 교육(Goal4), 빈곤퇴치(Goal1), 건강과 웰빙(Goal3), 깨끗한 물과 위생(Goal6), 지구촌 협력(Goal17)과 같은 SDGs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국제개발협력 CSO의 해외 사업비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나가며

- SDGs가 변혁적인(Transformative) 목표라고 불리우는 것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의 사고방식(Mindset)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임. 정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변혁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할 때 SDGs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임.

[제2세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사회: 신혜수 위원(유엔사회권위원회)

발표: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표1]

유엔 SDGs 이행추진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자발적국가리뷰(VNRs)와 G20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유엔 SDGs 이행추진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자발적국가리뷰(VNRs)와 G20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김태균 교수(서울대학교)

I. 들어가며: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승인과 SDGs 시대의 도래

- 가. 17개의 목표(goal)
- 나. 169개의 세부목표(target)
- 다. 240여개의 글로벌 지표

2. SDGs의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별성

- 가. Universal: 개도국에 초점을 맞춘 MDGs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SDGs
- 나. Multi-dimensional: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춘 MDGs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지속가능환경·평화안보까지 포함하는 SDGs
- 다. Multi-stakeholder: 이행주체를 국가에 국한한 MDGs에서 시민사회·민간기업·의회·재단 등으로 확대한 SDGs
- 라. Transformative: 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변혁하는 계기로 작동
- 마. Ambitious: “No one should be left behind.”

3. SDGs의 이행은 모든 유엔회원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숙제

4. 각 국가가 국내 조건과 맥락에 맞게 글로벌 규범을 어떻게 국내화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

- 가. SDGs 이행추진체계?
- 나. SDGs 국내 지표개발?

5.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적 해법을 모색

II. SDGs 이행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

- 가. 유엔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의 자발적국가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2016년 7월 유엔 HLPF에 총 22개국이 VNRs 제출
- 나. 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중국 항저우 G20 회의에 참가하는 20개국의 SDGs 이행에 관한 보고서
- 다. G20 Action Plan과 UN HLPF의 VNRs를 중심으로 SDGs (1) 이행추진체계, (2) 목표별 이행여부, (3) 국가지표개발 등 크게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OECD DAC, BRICS, 개도국의 세 그룹별로 비교분석

III. SDGs 이행추진관련 국별 계획 정리

1. OECD DAC 회원국

□ 한국(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00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재 환경부 소속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중심으로 지방에 설립된 지방의제21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DGs 이행을 모니터하고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외교부·환경부·통계청·국무조정실을 포함하여 SDGs 이행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SDGs를 주류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SDGs를 주류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부처가 최근 기존 법률과 정책 중 SDGs 달성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 맥락에 맞는 SDGs 세부목표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행추진체계를 조성하는데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했듯이 유엔의 공식적인 채널은 환경부로 되어 있는 반면, VNR을 제출한 부처는 외교부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SDGs 이행추진체계의 명확한 상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추진체계가 체계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 환경부 산

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SDGs가 포함하는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이미 140개의 국정과제(경제발전 42개, 사회발전 52개, 환경 13개, 거버넌스 23개)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SDGs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촉진 및 내수시장 수요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이행 중이어서 이는 SDGs 1, 2, 3, 4, 5, 8, 10, 17번과 연결된다.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과 2010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문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국가지표개발

현재 통계청이 SDGs 지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SDGs 이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국가지표 개발의 수준과 범주, 그리고 글로벌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 핀란드(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1992년 Rio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현재 국무총리가 이끄는 협력 포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구성원으로 23년간 참여하여 왔다. 핀란드 국내 정책 및 개발협력을 포함한 대외정책이 지속가능발전과 통합되어 보다 향상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갖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핀란드는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행해왔으며, 이는 2006년 'Towards Sustainable Choices. A Nationally and Globally Sustainable Finland'라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종합전략 채택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 전략은 2013년 12월 채택된 'The Finland we want 2050.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방향을 맞추기 위해 2016년 4월 수정되었다. 기업,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240여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자의 운영 계획(operational commitment)을 발표함으로써 'Society's Commitment(사회의 약속)'에 참여했다. 국무총리실은 이행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 계획 작성을 주관하고 있으며, 외교부 대표 및 NCSD 사무총장

과 함께 조정 사무국(Coordination Secretariat) 역할을 한다. 또한 전 정부 부처 및 핀란드 개발 정책 위원회(Finnish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FDPC)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 네트워크(Coordination Network)와 긴밀히 협업한다. 이외에 각 부처는 부문별 프로그램, 전략, 입법, 국제 협약 이행 등을 통해 2030의제의 주요 이행 주체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이외에 조정,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주요 이해관계자 위원회가 있다. FDPC는 국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ody)으로 개발 정책 관점에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담당하며, 정부 프로그램의 이행 및 정부의 개발 정책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NCSD는 국무총리가 이끄는 협력 포럼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왔으며,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핀란드 정책과 통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30의제 채택 이후 양 위원회(FDPC와 NCSD) 간 협력이 워크숍, 연석회의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8명의 교수와 원로 학자들로 구성된 학제적 지속가능발전 전문 패널은 NCSD의 업무를 검토하고 발전시키며,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 필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핀란드의 주요 과제는 환경, 경제, 고용 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젠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과다 사용, 국내 연료 소비, 생산기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실업률 등은 SDG 7, 8, 12, 13, 15번 목표에 있어 핀란드의 성과를 낮추는 지표들이다. 성평등에 있어서는 핀란드의 순위가 높지만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혹은 성별 임금 격차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SDG 1, 3, 4 목표인 빈곤, 보건, 교육 등 사회 분야 관련 목표에 있어서 핀란드의 지위는 높은 편이다.

(3) 국가지표개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통계 유효성에 대한 초기 검토에 의하면, 지표의 약 40퍼센트가 바로 측정 가능하며, 동일한 비율의 지표는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은 39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 및 리뷰 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2014년 '사회의 약속'의 8개 전략 목표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검토를 거친 후 갱신하여 2030의제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을 보완할 것이다. 통계, 연구, 평가, 정책, 이해당자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특정 지표 네트워크(Indicator Network)가 이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할 것이다.

□ 스위스(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SDGs가 스위스에 정착되는 이른바 전환기로써, 포괄적인 종합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고, 이는 임시 부처간 워킹 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워킹 그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30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및 후속조치(follow-up)를 위해 연방 중앙정부(Federal Administration)내 제도적 절차와 책임 명확히 함
- SDGs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를 아우르는 기준치 정보 조사(baseline study), 갭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2030의제 이행에 있어 우선순위 분야 확인
- 스위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확장하여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보장

스위스와 같이 분산적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가내 하위 행정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30의제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모든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칸톤, 코뮌 간의 수직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과거의 참여적 절차는 2015년 가을부터 통합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포괄적인 협의 과정인 “2030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화(Dialogue)”가 마련되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2016년 1월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속가능발전이 모든 정책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2016-2019년 지속가능발전전략(SDS)을 채택했다. SDS는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 9개 주제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SDGs와 연결된다.

1. 소비 및 생산 (SDG 12번)
2. 도시 개발, 모빌리티, 인프라 (SDG9, 11번)
3. 에너지 및 기후 (SDG 7, 13)
4. 천연자원 (SDG 2, 6, 14, 15)
5. 경제 및 금융 시스템 (SDG 8, 10, 16, 17)
6. 교육, 연구, 혁신 (SDG 4)
7. 사회적 안전 (SDG 1, 16)
8. 사회적 화합 및 성평등 (SDG 5, 10, 16)
9. 보건 (SDG 3)

(3) 국가지표개발

SDGs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스위스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인 MONET를 2003년부터 활용해왔다. 약 75여개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지표가 있으며, 이는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30의제 및 SDGs를 적용시키기 위해, 2016년 5월 통계 시스템의 레퍼런스 프레임워크가 수정되었고, 이로써 국내 및 국제 보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독일(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독일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SDS)을 SDGs 달성에 있어 주요 프레임워크로 결정하였다. 본 전략을 2030의제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6년 가을 완료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이 갖는 높은 정치적 중요성과 범분야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NSDS 이행은 수상관청이 주관한다. 동시에 모든 부처는 각자의 정책 현장에서 2030의제 이행에 공헌할 주된 책임이 있다. NSDS의 주요 원칙은 세대간 평등, 삶의 품질, 사회 통합, 국제적 책임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주도하며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감독한다. 전 연방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Head of the Federal Chancellery)이 의장으로 있다. 본 위원회는 서로 다른 정부 부처가 각자의 지속가능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고위급 포럼으로써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회자문협의회(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의 지속가능 의제를 지원한다. 국회자문협의회는 연방정부의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점검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Th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독립적인 자문단으로써 2001년부터 독일 정부를 지원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문적, 개인적 배경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을 대표하는 15명의 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독일 개발정책은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기아의 구조적 원인, 영양실조, 극심한 빈곤 해결
- 교육/연수, 고용, 녹색 경제, 사회 인프라 통해 특히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회 창출, 이주의 원인이 되는 문제 해결

- 책임있는 공급망, 최소 사회·환경적 기준 촉진 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고용 기회, 공정거래, 수입 촉진으로 평등한 세계화
- 민간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촉진
- 기후변화 완화, 천연자원 보호

이밖에 굿거버넌스와 성평등 촉진은 범분야 과제인 동시에 개발 정책에 관한 양자 및 다자 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3) 국가지표개발

정부는 2002년 첫 NSDS를 발표하였다. 이후 4년마다 이행 상황을 경과보고서 형태로 보고해 왔으며, 동시에 전략의 내용도 갱신해왔다. 본 보고서 준비과정은 항상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및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다. NSDS는 국가지속가능 목표와 지표를 2002년부터 포함시켜왔다. 2년마다 독일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은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독립적인 지표 보고서를 발표한다.

□ 프랑스(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Interministerial Represent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General Commissioner가 국무총리에게 위임받아 본 리뷰 보고서 초안 작성을 주도하였다. 국무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 관료 네트워크를 주도한다. 2016년 6월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해양부 장관과,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장관이 SDGs 이행에 관한 협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주(Sustainable Development Week) 막바지에 열렸고 180명이 넘는 주체들이 참여했다. 국가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국가 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Ecological Transition), 개발 및 국제연대를 위한 국가 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인권에 대한 국가 자문 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과 본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상의하였다. 또다른 시민사회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는 국무총리로부터 올해 가을 다음 부처간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CID) 회의를 준비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받았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 활동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2016년 가을에는 지역적 협의 워크숍을 열어 지역 행위자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참여적인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할 계

획이다. 매년 유럽 지속가능발전 주(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Week)를 활용하여 사회 단체들의 프로젝트 촉진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현재 프랑스 정부가 당면과제로 강조하는 SDGs 관련 목표는 다음과 같이 3개 부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1. 취업률

2015년 12월 프랑스 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여 유로존 평균인 10.4%에 거의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25세 미만 취업준비생 비율은 25.9%로 유로존 평균인 19.7%를 웃돌았다. 3년전 프랑스는 실업에 맞서기 위해 사회보장 비용 절감, 직업 훈련 개선, 청년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에 기반한 계획을 발표했다.

2. 사회 불평등

현재 일곱 가정 중 한 가정은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한달 960유로 미만 수입). 다섯 명 중 한 명의 어린이는 매우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동일 업무 시간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3.5%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이는 특히 고위직일수록 심각하다.

3. 기본권 및 참여적 민주주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중 협의, 합의 컨퍼런스, 지방 국민투표 등에 있어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3) 국가지표개발

새로운 부와 관련된 지표(new wealth indicators)를 개발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2015년 4월 13일 법안 통과와 함께 프랑스는 새로운 10개 부의 지표를 갖추게 되었다. 고용, 투자, 국가 부채, 보건, 불평등, 교육, 환경보호, 행복을 다루는 이 지표들은 단순히 GDP를 넘어서 발전에 대한 측정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공공 정책결정에 추가될 것이다. 이 지표들은 2030의제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유럽 2020 전략의 국내 버전인 국가 개혁 프로그램과 일치한다.

□ 노르웨이(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15년 9월 SDGs 채택 이후 정부는 국내 후속조치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는 예산 절차와

연관되어 있다. 각각 17개 SDG 목표에 대한 책임은 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에 있고, 조정부는 여러 세부목표 후속조치에 있어 타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각 부서는 예산 제안(budget proposal) 시 담당하고 있는 목표의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국가 예산 백서에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의회(Storting)에 주 예산과 함께 매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SDGs 후속조치에 대한 연간 보고를 국회 절차에 제도화하는 것을 보장한다. 토착민들의 의회인 Sámediggi는 관련 부처와의 대화 및 정식 협의 기제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지방 및 지역 당국과의 기존의 협력 기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비즈니스 부문, 학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및 파트너십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 걸쳐 노르웨이 정치민주적 체계에서 지속되어온 특징이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정부는 특히 청년들과 소외될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고용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우선적 도전과제들이 있다:

- 비전염성 질병 감소 및 정신 건강 촉진
-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
-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 청년 중 고용되지 않거나, 교육/연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율 감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 최저 수입 40%에 해당하는 인구의 수입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
- 도시 공기의 질 개선
- 음식물 쓰레기 절감
-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영향 감소
-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된 사망률 감소 및 조직범죄 퇴치

(3) 국가지표개발

2030의제 후속조치에 있어 IAEG-SDGs가 제안한 글로벌 지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품질 높은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노르웨이는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국가 맥락에 가장 관련 있는 지표부터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노르웨이 기타 국가 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이미 국가

세부목표와 환경 관련 지표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UNEP, 유엔 통계위원회, OECD, EU/EEA,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 등 현재 참여중인 국제 이니셔티브 및 기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은 유엔의 지속적인 지표 개발 과정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SDG 세부목표를 위한 지표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G20 Action Plan)

(1) SDGs 이행추진체계

일본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하여 국가이행프레임워크(National Implementation Framework)와 이행지침원칙(Guiding Principles)을 정하고 2016년 5월 20일 아베총리 주재로 모든 부처의 장관이 참석하는 내각 내부에 SDGs 촉진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s: SPH)를 설치하였다. 이는 범정부(whole-of-government) 접근방식이며 일본 정부가 SDGs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행지침원칙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이 추진하는 SDGs의 비전, 우선순위,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follow-up 메커니즘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SDGs 중에서도 보건, 젠더, 재해위험복구, 교육, ICT, 농업, 식량안보와 영양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개최한 이세시마 G7 회의에서 결정된 'Ise-shima Principl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를 강조하고 개발재원의 다원화와 혁신적인 기술 전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행주체로는 multi-stakeholder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2016년 8월에 제6차 동경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를 아프리카에서 개최하면서 이를 확장하고 있다.

(3) 국가지표개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2. BRICS 회원국

□ 중국(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중국은 2030의제를 국내 중장기 개발 전략과 연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43개 정부 부처로 이루어진 국내 조정 기제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향후 5년간 중국은 현재 빈곤선 아래의 5,575만명의 농촌 거주자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1인당 GDP를 2010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9개 국가 우선순위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농업생산성 및 식량안정성 증진 통한 빈곤, 기아 종식
- 혁신적인 개발 전략 이행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 생성
- 도시와 농촌 간의, 또한 지속가능발전 세 개 부문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산업화 촉진
- 사회안정망 및 사회서비스 개선하여 기초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평등, 사회정의 보호를 통해, 웰빙, 전반적인 인간개발
- 환경보호, 생태안전을 위해 보호 장벽 구축
-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및 이를 국가 개발 전략에 통합
-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효율적 활용 촉진
- 국가 거버넌스 향상

(3) 국가지표개발

국가지표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3. 중진국/개도국

□ 에스토니아(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16년 봄 정부 정책과 SDGs 간의 예비적인 겹 분석이 실시되었고, 본 리뷰를 위해 활용되었다. 본 보고서는 에스토니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Estonia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ESDC)와 여러 부처간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간 워킹그룹 역시 조정 및 모니터링 기능을 하며, 전 부처 대표들과 통계청(Statistics Estonia)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킹그룹은 필요에 따라 (ad-hoc basis) 논의를 갖고 업무를 진행한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1995년 지속가능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2005년에는 에스토니아 지속가능발전 전략인 “지속가능한 에스토니아 21”을 채택하였다. 본 전략은 주제별 전략 및 활동 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가 이행한다. 에스토니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음 4가지 목표를 명시한다:

- 에스토니아 문화적 공간의 생존
- 복지 성장
- 일관성 있는 사회 (사회 통합)
- 생태계 균형

(3) 국가지표개발

SDGs 이행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 된다. 지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관련 지속가능발전 주제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처간 지속가능발전 워킹그룹, 통계청(statistical office), 정부(Government Office)가 함께 협력하여 동의했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231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초기 검토를 했다. 지표의 약 14%는 현재 바로 측정이 가능하며, 2016년 지표 업데이트가 시작될 것이다. 목표는 다음 지표 기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에스토니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글로벌 SDGs에 대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표 작업은 부처간 협의회, 통계청, ESDC가 함께 협력하여 작업할 것이다.

□ 터키(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는 SDGs 이행 과정에서 정책일관성 방식을 따를 것이다. 개발부는 조정 기능을 갖고, SDGs이행은 모든 부처들 간의 책임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모든 관련 전략 및 정책 문서에 SDGs가 통합될 것이다. 또한 개발부 산하 지속가능발전 조정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ssion, SDCC)가 있다. SDCC는 SDGs 이행에 있어 후속조치, 리뷰 역할을 담당한다. SDCC는 개발부의 조정 역할과 같은 선상에서, SDGs 이행 및 점검을 위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SDGs 달성에 있어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SDCC 구성원을 늘리는 것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2030의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NGO, 학계에도 책임을 준다.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새로운 개발의제 맥락에서, 평등과 지속가능성을 주축으로 하는 인간중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빈곤을 싸우고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은 터키의 우선순위이다. 평화로운 사회, 법치 보장, 굿 거버넌스 등 강력한 제도적 역량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기둥으로 여긴다. 관련 기관들의 역량개발 및 구축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3) 국가지표개발

모니터링 과정에서 터키 통계 연구소(Turkish Statistical Institution, TURKSTAT)의 역할과 역량 역시 강화될 것이다. 터키는 이미 2000년이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갖춰왔으며, 10개 부문, 132개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TURKSTAT는 UN 통계위원회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맞춰, SDGs 국가 우선순위 목표를 염두에 두고, 현재 지표를 발전시킬 것이다. 데이터 갭을 채우기 위한 분석이 곧 시작될 것이다.

□ 이집트(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15년 9월 SDGs 채택 이전에 이집트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 부문을 포괄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 맞는 주요 국가 프로젝트와 계획은 새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SSD)인 이집트 비전

2030 (SDS 혹은 비전 2030)에 통합되었다. SDS는 다양한 정부 기관, 시민사회, 학계, 및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는 2016년 2월 새로 선출된 국회에 의해 승인 받고 통과 되었다. SDS는 이집트 모든 개발 전략의 최상위 정책이고, 글로벌 SDGs는 SDS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국가 수준에서는 2015년 12월 국가 부처간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가 국무총리령(Prime Ministerial Decree) 하에 출범하였고, 조정부는 국제협력부(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다. 위원회는 SDGs 이행 후속조치 점검 및 SDGs가 이집트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우선순위에 통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받았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SDGs 이행에 있어 이집트 우선순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집트는 또한 과학, 기술, 혁신이 지속가능발전과 경제 성장에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AAA)와 기술협력에 큰 의미를 둔다.

(3) 국가지표개발

관련 부처에 모니터링 및 평가실(unit)도 설립되었다. 2015년 국제협력부 내 전략적 계획 및 모니터링, 평가실이 재가동 되었다. 모든 단계의 ODA 관리 사이클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2016년 4월 국가통계기관인 CAPMAS 내 지속가능발전실(Sustainable Development Unit, SDU)가 설립되어 SDGs와 이집트 비전 2030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도한다. 또한 이집트는 SDGs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제를 구축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UN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 사모아(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현재 사모아 발전을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amoa, SDS 2012-2016)이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이행 중에 있다. SDS의 장기적 비전은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7개 National Outcomes에 기반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반영한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SDS는 전반적으로 SDGs와 일치한다. 1-6, 10번 목표는 MDGs 이후 아직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행에 있어 우선순위이다. Pacific Framework for Regionalism 하에 지역적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13, 14, 15번의 환경적 목표가 국가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다. 7, 8, 9번 목표는 경제 성장과 삶의 기회 달성에 있어 핵심적이다. 11, 12번 목표는 적절한 세부목표 및 지표 개발에 있어 더 주목해야 한다. 16, 17번 목표는 의미있고 강화된 협력을 통해 이행기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3) 국가지표개발

SDS 중간보고의 일환으로 SDS와 SDGs 간에 예비적인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다. 리뷰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SDS 2016-2010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및 기회 창출)이 작성되었다. 2015년 9월 SDGs 채택 이후 통계청(Bureau of the Statistics)은 모든 주요 부문 이해당사자들에게 SDGs 지표에 대한 예비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이들은 지표의 연관성, SDS의 국가 및 부문별 지표와의 일치성(alignment)에 대해 코멘트 했다.

□ 시에라리온(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대통령실(Office of the President)은 SDGs 이행 과정에 폭넓은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재정경제개발부, 외교 및 국제협력부는 운영적, 기술적, 외교적 리더십을 제공한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시에라리온은 에볼라, 내전, 자연재해 (SDG 11 필요), 지역적 분쟁 (해적, 마약, 인신매매, 불법 금융 유통) 등의 여러 도전과제를 맞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SDGs가 향후 개발 과제들을 극복하는 시기적절한 기회라고 여긴다.

(3) 국가지표개발

시에라리온의 SDGs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테크니컬 워크숍이 조직되었다. 시에라리온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SDGs 지표 초안이 작성되었다.

□ 필리핀(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SDGs 이행 원년이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있는 SDGs 이행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DGs를 장기 비전과 목표(Ambisyon Natin 2040) 및 국가, 부문, 국가 하위 단위 계획 및 프레임워크에 동시에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고위급 부처간 NEDA 위원회를 만들어 SDGs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전반적으로 SDGs 모든 목표와 국가발전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3) 국가지표개발

여러 번의 테크니컬 워크숍을 통해 데이터생성의 규칙성, 비집계 데이터 가용성 등에 기반한 지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업데이트된 필리핀 통계 개발 프로그램 2011-2017에 데이터 생성에 있어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SDGs에 대한 챕터가 추가되었다. 또한 정부는 SDGs 웹페이지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비집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통된 정의가 없는 경우, SDGs 목표 전반에 걸쳐 지표가 겹치는 경우, 몇몇 지표 측정 방식이 없는 경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SDGs 총 지표수 중 반 이상에 해당되며, 주로 12번(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14번(해양 자원 보존), 6번(물과 위생), 10번(불평등 감소)에 해당된다.

□ 우간다(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기존의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2030의제 이행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간다는 2030의제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몇몇 개혁 및 법률을 소개했다. 그 중 공공 재정 관리법(2015), 공공 민관 협력법(2015), 금융 기관 개정법(2015) 등이 대표적이다. 우간다는 GDP 대비 국내 수입 증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서비스 전달 효율성, 기술과 혁신 활용, 공공 조달 개혁, 부채 관리, 개발 파트너들, 민간 부문, 학계, 시민과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정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우간다 정부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 이행을 시작했

다. 부 창출, 보편적인 초등 및 중등교육, 청년 생계 프로그램, 대학생 대출 계획, 노인 역량강화 사회지원 보조금, 법적 지원 프로그램,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 지역 나무심기 프로젝트, 우간다 숙련인력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국가지표개발

2020년까지 중견수입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이행 과정을 추적하는 국가 기본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 통합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간다는 이미 230개의 글로벌 지표 중 80개 지표만 현재 국가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모든 SDGs 세부목표를 다루는 기타 지표를 개발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몬테네그로(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몬테네그로 정부는 2007년 4월 첫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SSD) 및 그에 상응하는 2007-2012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NSSD 이행에 관한 5개의 연간 진행보고서를 채택했다. 2012년 NSSD 효력 기간 만료 이후 특히 EU 가입 과정과 관련한 개혁, 또한 Rio+20에서 채택된 The Future We Want 문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7월 NSSD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단순한 리뷰가 아닌, 2030의제에 맞춰 새로운 NSSD를 개발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NSSD 초안은 2015년 12월 채택되었다. 가장 복잡한 작업은 2030의제에서 요구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AAAA 권고 사항을 NSSD의 전략적 목표에 이전시키는 작업이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몬테네그로는 다음 우선순위를 갖는 이슈 관련해서 재정, 역량강화, 기술 및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효율성, 효과성 강화
- 통계청 (Statistical office of Montenegro, MONSTAT) 및 기타 통계 데이터 생산 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지표 측정 및 관리
- 몬테네그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자원 동원; 총 국가 예산에서 GDP 대비 지속가능

발전 예산 증액; 공공, 민간부문 재원을 다양화하도록 국가 파트너십을 강화

- NSSD 2030 이행에 있어 국가 과정의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 천연 자본 보존, 녹색 경제 관련 이행을 실시

(3) 국가지표개발

지표에 있어서도 글로벌 SDGs 지표 241개를 향후 NSSD 2030 이행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주요 도구로 결정하였다. 241개 지표를 NSSD로 이전하는 데 있어 필요사항을 평가한 결과 몬테네그로는 현재 28개 지표만 (12%)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3개 지표는 내용에 따라 대체 가능하고 (33%), 37개 지표는 2018년부터 측정 가능하다 (15%). 이로써 대체 가능한 지표 포함 지표수의 41%인 총 98개 지표가 2018년부터 모니터링 가능하다. 나머지 UN의 143개 지표는 몬테네그로에 도입할 계획이 현재 없으며(59%), NSSD에서 국가 시스템에 측정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31개 지표가 여러 국제기관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며, 몬테네그로가 포함되어있다(13%). 이들 추가적인 지표가 2018년부터 모니터링 될 총 지표수에 포함된다면, 총 129개 지표들이 국내외적으로 (54%) 측정될 수 있다.

□ 조지아(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정책분석, 전략계획 및 조정부(Department of Policy Analysis, Strategic Planning and Coordination)와 해당 부서 내 계획 및 혁신실(Planning and Innovations Unit)에서 SDGs 이행 조정을 총괄하고 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2016년 정부는 인권,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 관련있는 SDGs를 논의하기 위해 테크니컬 워킹그룹을 신설했다. 각 세부목표마다 베이스라인 확정, 상호 보완적인 국가 지표 셋팅, 2030년을 위한 통계적 예측(quantitative projections)이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 SDGs 17개 목표 중 14개 목표 및 88개 세부목표가 우선순위로 결정되었으며, 포괄적인 사회, 국내이재민, 경제와 빈곤, 교육과 고용, 보건, 에너지, 환경, 인권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또한 세부목표에서 사용된 단어가 조지아의 특정 맥락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만큼 최소한 수정되었다. 관련 부서 내 전문가들은 주로 UN 조지아 현지 기관, UNDP가 이끄는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지표를 결정했다. 다음 논의 단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를 초청할 계획이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계획문서인 연간 정부 업무 계획(Annual Governmental Work Plan, AGWP)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실현시킬 것이다.

(3) 국가지표개발

조지아는 많은 분야에 있어 부문별 비집계 데이터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지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지아 정부의 장기적 역량강화 및 현존하는 갭을 채우기 위해서 UN 조지아 국가 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 조지아 국가 통계 연구 인프라 및 관행들이 추가적인 연수, 자원 동원, 인적 자원 개발 등을 필요로 한다.

□ 콜롬비아(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2015년 2월 산토스 대통령이 ODS Commission이라는 2030의제 및 SDGs 이행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부문, 이익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한 1) 지표 2) 국내 3) 자원 동원 4) 국제 이슈 5) 커뮤니케이션의 5개 워킹그룹으로 기능한다. 위원회는 1) 정책 및 프로그램 2) 지표 3) 자원의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행 전략을 수립해왔다. 2016년말 이러한 작업 끝에 CONPES 2030이라는 해당 국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공공 정책 문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콜롬비아는 다음 SDG 목표과 목표들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1번 빈곤 종식
- 3번 건강한 삶의 방식, 복지 증진
- 8번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경제 성장, 완전한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 13번 기후 변화 대응.

(3) 국가지표개발

지표 관련해서 콜롬비아는 IAEG-SDGs에 참여해왔으며, 글로벌 지표의 54%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고, 30%는 부분적인 데이터가 있으며, 16%는 가능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것을 밝혔다. 국가 통계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DANE) 리더십 하에 정부 기관들과 함께 작업 중에 있고 2016년 하반기에 국가 지표 최종 버전을 개발할 것이다.

□ 베네수엘라(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베네수엘라에는 Council of Vice라고 불리는 고위급 협의회가 있다. 행정부통령(Executive Vice President)이 주도하고, 6개 부문 대표가(Sectoral Vice)가 참여한다. 이들은 한 주에 3회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 개발 계획 2013-2019에 적용된 개발정책 전 부문에 걸쳐 범분야적인 요소를 논의하고, 2030의제와의 일치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자 및 통합문제를 위해 임명된 차관(Deputy Minister)이 이끄는 조정 그룹은 범부처 차관들과 국제협력 Director가 참여하며, 2개월마다 만나서 부문 정책과 프로그램,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정책, 글로벌 SDGs 지표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 논한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베네수엘라는 현재 2013-2019년 사회경제개발계획과 2030의제 이행을 통합하는 작업 중에 있다. SDGs의 많은 목표들이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 조율 및 예산 관련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 베네수엘라는 에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사회·환경·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2030의제와 일치한다. 특히, 빈곤 종식, 도시의 지속가능성,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생산적 모멘텀 형성 등이 국내 우선순위 과제이다.

(3) 국가지표개발

국가통계기관인 INE는 처음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제안한 309개 지표 중 60% 이상 분석하였고, 관련 정부 기관들과 작업하여 관련 지표들을 채택 및 실행하려는 과정에 있다. INE 작업은 긍정적인 예비 결과를 보였다. 최소 184개 지표의 가용성을 밝혔다. 22개 지표는 실행 가능성이 없으며, 43개는 이미 데이터가 있다. 122개는 빈곤과 불평등을 통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지표를 만들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016년 5월 새로운 포털인 국가 지리통계 시스템(National Geostatistical System)을 경제 어젠다 최적화 및 전략 개발 가이드라인을 계획하는 틀로써 론칭하였다.

□ 멕시코(G20 Action Plan, 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대통령실내 technical cabinet은 국가개발계획 2014-2018에 제시된 목표와 일치하고, 이는 2030의제와 비슷하다. 또한 몇몇 부처간 위원회가 있다. 2003년 출범한 사회개발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는 현재 업무 내용을 2030의제에 맞춰가고 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2030의제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SDGs 로 이어지는 공공 정책 이행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 정확한 연결과 조정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2030의제의 사회, 경제, 환경의 범분야적인 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구조를 확인한다.

(3) 국가지표개발

2015년말, MDGs 데이터 시스템 관련 전문기술위원회(CTESIODM)가 2030의제 프레임 내에서 새로운 SDGs 지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CTESIODM은 2010년 출범하여 대통령 주도 하 국가 통계 기관(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지리 및 인포매틱스 (INEGI), 국가 인구 협의회(CONAPO) 및 15개 부서가 참여한다. 2016년 2월, 새로운 SDGs 전문기술위원회(CTEOS) 첫 회의가 열렸다. CTEOS는 CTESIODM을 이끄는 동일한 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에는 8개 부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CTEOS는 2030의제 목표, 세부목표,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책임을 맡는다. 현재 아직까지 각각의 지표가 나타내는 가치와,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에 있다. 이 단계가 끝나면 국가 지표를 결정할 것이고 2016년 중에 열릴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것이다.

□ 마다가스카르(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SDGs 이행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마다가스카르는 Agenda 21 및 MDGs 이행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정치적 약속을 반영하는 2016년 로드맵을 확립하였다. 2030의제의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은 공식적으로 2015년 7월 장관 협의회(Council of Ministers)가 모여 국가적으로 논의 하면서 출범하였다. 제도적 프레임으로는 조정 및 모니터링 위원회(Steering and Monitoring Committee, COS)가 2015년 7월 국무총리령으로 출범하였다. 국무총리, 기술 위원회, 경제계획부가 의장으로 있으며, 정부부처, 민간 부문, CSOs, 학계, 개발협력파트너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개발협력파트너 지원을 조정하는 UNDP를 포함하여 UN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 수준에서는 4개 지역에서 (Menabe, Itasy, Amoron'i Mania and Diana) 2016년 상반기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를 통해 개발 주체들의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방 정부 당국의 SDGs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수집하는 과정이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마다가스카르는 MDGs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이다. 1990년과 비교하여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는 아직 끝내지 못한 MDGs 목표도 계속해서 당면하고 있다. MDGs에서의 교훈이 SDGs 이행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3) 국가지표개발

SDGs에 있어 통계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특히 시스템 수준에서의 지표 및 세부목표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제계획부 및 국가통계기관(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이 통계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을, SNU/UNDP 및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업데이트했다.

□ 모로코(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 UN 시스템을 포함하는 참여적 방식을 도입하였다. 인간, 환경, 평화, 협력 등 2030의제 4개 부문에 따라 패널을 구성하였다. UNESCO, ESCWA, UNDP, UNICEF 등과 협력하여 발표회를 갖는 등, 시민사회와 지방 정부 대표들에게 소개하려는 시도하였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정부 및 국회의 고위급 수준의 국가 논의를 통해 SDGs에 맞추어 국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논의를 통해서 모로코 부문별 전략에 이미 2030의제의 많은 목표들과 세부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3) 국가지표개발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UN 통계위원회가 개발한 글로벌 지표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방식으로 발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표 개발에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 국가간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토고(VNR)

(1) SDGs 이행추진체계

SDGs 이전에 토고는 이미 조화로운 사회경제개발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이는 2011년에 개발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NSDS)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SDGs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계획 시스템이 개발되고 승인되었다.

(2) SDGs 목표별 이행여부

다음은 포스트-2015 의제 개발의 일부분으로써 토고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여러 이니셔티브의 예시이다:

- 국가 역량강화 개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현대화 프로그램
- 지속가능발전 분석 grid를 위한 연수
- 개발 관련 도구 마스터링 연수,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전략
- 국회위원들의 포스트-2015 의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 미디어 및 시민사회 의식

(3) 국가지표개발

새로운 2018-2022년 국가개발계획이 SDGs를 통합하는 작업에 있어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목표, 세부목표, 지표가 확정되었다.

IV. SDGs 이행추진체계 비교정리

		OECD DAC	BRICS	개도국
이행추진 체계	대통령/총리	핀란드, 프랑스,		시에라리온, 콜롬비아
	개별부처	한국(논의중), 노르웨이(조정부)		터키(개발부), 조지아(개발부)
	범부처	독일, 일본	중국(논의중), 러시아(논의중)	에스토니아, 이집트,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특별위원회	스위스		베네수엘라(Council of Vice), 모로코(법정부/시민사회)
	미정			몬테네그로, 우간다, 멕시코, 토고
목표별 이행여부	전체			사모아, 필리핀
	우선순위별	한국, 핀란드, 스위스, 독일,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중국	에스토니아, 터키, 이집트, 시에라리온, 우간다, 몬테네그로, 조지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마다가스카르, 토고
국가지표 개발	글로벌지표중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국별지표중심	한국, 핀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터키, 이집트, 사모아, 필리핀, 우간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모로코, 토고

V. 한국의 향후 SDGs 추진체계 전략

1. 보다 명확한 추진체계의 제도화 시급

현재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SDGs 이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초기에 대통령실 직속에서 총리실 산하, 그리고 현재에는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에 대한 조정기능 및 기획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또한 환경 중심의 SDGs 프레임이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하고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최소 총리실 이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SDGs와 조율된 국내 우선과제 선정 필요
2. 통계청 중심으로 SDGs 평가 프레임 확정 및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 필요

[발표2]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¹⁾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 지난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SDGs는 향후 15년 간 세계번영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규범임
 - 동 규범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국가별 이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발전 모델 중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점검은 매우 의미있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유엔 SDGs 이행은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적 이행은 유엔 SDGs 중 한국이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 이행은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임
 - 이 같은 측면에서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유엔 SDGs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 글은 유엔 SDGs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이 글은 최종본이 아니므로 관련 내용에 수정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개선방향이나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힘

2. 유엔 SDGs 개관

1) 유엔 SDGs 형성과정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SDGs는, 2010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mmit on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 MDGs를 대체할 ‘Post-2015 개발의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부문에 속한 약 14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5년 간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됨
 - 동 논의는 유엔 사무처의 경제사회국(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ris)이 주도한 논의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t)²⁾가 주도한 논의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됨
- 우선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부서(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Affaris)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60개 이상의 유엔 기관 및 국제기구로 구성된 ‘유엔시스템 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을 결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 개발과 관련한 정부 및 시민사회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2012년 6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2012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라이베리아 대통령 및 영국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대표 등 27명으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현인들의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을 구성하여 Post-2015 개발의제의 비전과 제언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동 패널은 2013년 5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변혁’(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³⁾를 제출함

2) 동 위원회는 2013년 12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대체됨

-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 MDGs를 향한 진보의 가속화와 2015 이후 유엔 개발의제’(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한편 Post-2015 발전의제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 경제사회국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도하여 2012년 6월에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또는 ‘리우+20’(Rio+20)⁴⁾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Post-2015 발전의제의 핵심은 SDGs⁵⁾가 되어야 함을 선언함
- 2013년 8월 ‘리우+20’ 회의 후속조치로 ‘유엔 지속가능발전재원 정부간 전문가회의’(ICESD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가 설치됨⁶⁾
- 2013년 유엔총회에서 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개작업반’(OWG: 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이후 2014년 7월까지 총 13차례회의를 거쳐 최종 문서를 유엔에 제출함
- 이를 토대로 2014년 12월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2030년까지의 존엄성을 위한 여정: 빈곤 퇴치, 모든 삶의 변혁, 지구 보호’(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라는 종합보고서⁷⁾를 제시함

3) 동 보고서는 Post-2015 발전의제와 관련하여 ‘Leave No One Behind’,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함

4) 이 명칭은 1992년 동일 장소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유엔지속가능정상회의’, 또는 ‘지구정상회의’, 또는 ‘리우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개최된 회의라는 의미임. UNCED는 10년에 한번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리우+10’(Rio+10)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5) 주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유엔에서 채택된 SDGs와는 차이가 있음

6) 동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국내공공재원, 국내사적재원, 국제공공재원, 국내사적재원, 혼합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재원별 성격과 동원방안 및 거버넌스 차원의 방안을 제시함

7)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Post-2015 의제의 의의를 보편성, 변혁, 사람중심, 환경고려, 포용 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존엄(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 인류(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과 아동 포용), 번영(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성장), 환경(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 정의(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강력한 제도추구), 파트너십(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추진)이라는 6가지 필수요소를 제안함. 이와 함께 이행수단으로 개발재원(ODA·공적자

- 이후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5년 9월에 유엔 정상회의에서 SDGs가 탄생하게 된 것임

2) 유엔 SDGs의 주요내용

- 유엔 SDGs는 경제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통합, 거버넌스 등 4개의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6개의 구성요소(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총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241개의 지표로 구성됨

〈표 1〉 유엔 SDGs 주요내용

기본요소	목표	세부목표(수)	지표(수)
존엄(Dignity)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7	12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8	14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9	14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8	11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17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0	10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0	15
정의(Justice)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9	14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있으면서 포용적인 제도 구축	12	23
파트너십 (Partnership)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0	10
	17.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9	26

금 및 민간재원투자의 중요성)과 기술과학혁신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역량구축 메커니즘 설립 등)을 강조함. 또한 책임성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측정방식 개선 (GDP의 대안 마련), 데이터 혁명 (데이터 교육, '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세계 지속가능발전 데이터 포럼' 개최 추진) 강조, 보편적 점검 체계(국별 보고서, OECD DAC 동료평가 등 지역 메커니즘, 글로벌 차원에서 고위급 정치포럼(HLPF)-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PEDC) 등 활용) 제안함

기본요소	목표	세부목표(수)	지표(수)
인류(People)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13	26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교육 기회 증진	10	11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8	11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0	10
	17.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9	26
지구(Planet)	7. 모두에게 지속가능 에너지 보급	5	6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8	12
	12.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11	13
	1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5	7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이용	10	10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보호	12	14
번영 (Prosperity)	5.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9	14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17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8	12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0	10

□ 이 같은 유엔 SDGs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MDGs와 구분됨

- 첫째, MDGs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주로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SDGs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SDGs는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MDGs에서 다루지 않던 폭력이나 분쟁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둘째, MDGs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전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에, SDGs는 선진국도 발전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여성역량 강화나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많은 발전목표는 선진국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임. 즉 MDGs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만을 위한 발전목표였다고 한다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발전목표임
- 셋째, MDGs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핵심적인 재원으로 했던데 반해, SDGs는

ODA와 이를 초월한 다양한 개발재원의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여기서 다양한 개발재원이라 함은 개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국제 및 국내적 공공 및 민간재원 등을 포함함

- 넷째, MDGs와 SDGs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은 참여주체의 범주임. 우선 국제적 측면에서 MDGs는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 소위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전문제를 고민하는 ‘남-북 협력’이 주요한 형태였다고 하면, SDGs는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아랍지역 국가 등의 기여를 포괄하여 ‘남-북 협력’ 및 ‘남-남 협력’의 형태도 포괄한다는 점임.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는 앞에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기업 포함)도 매우 중요한 참여주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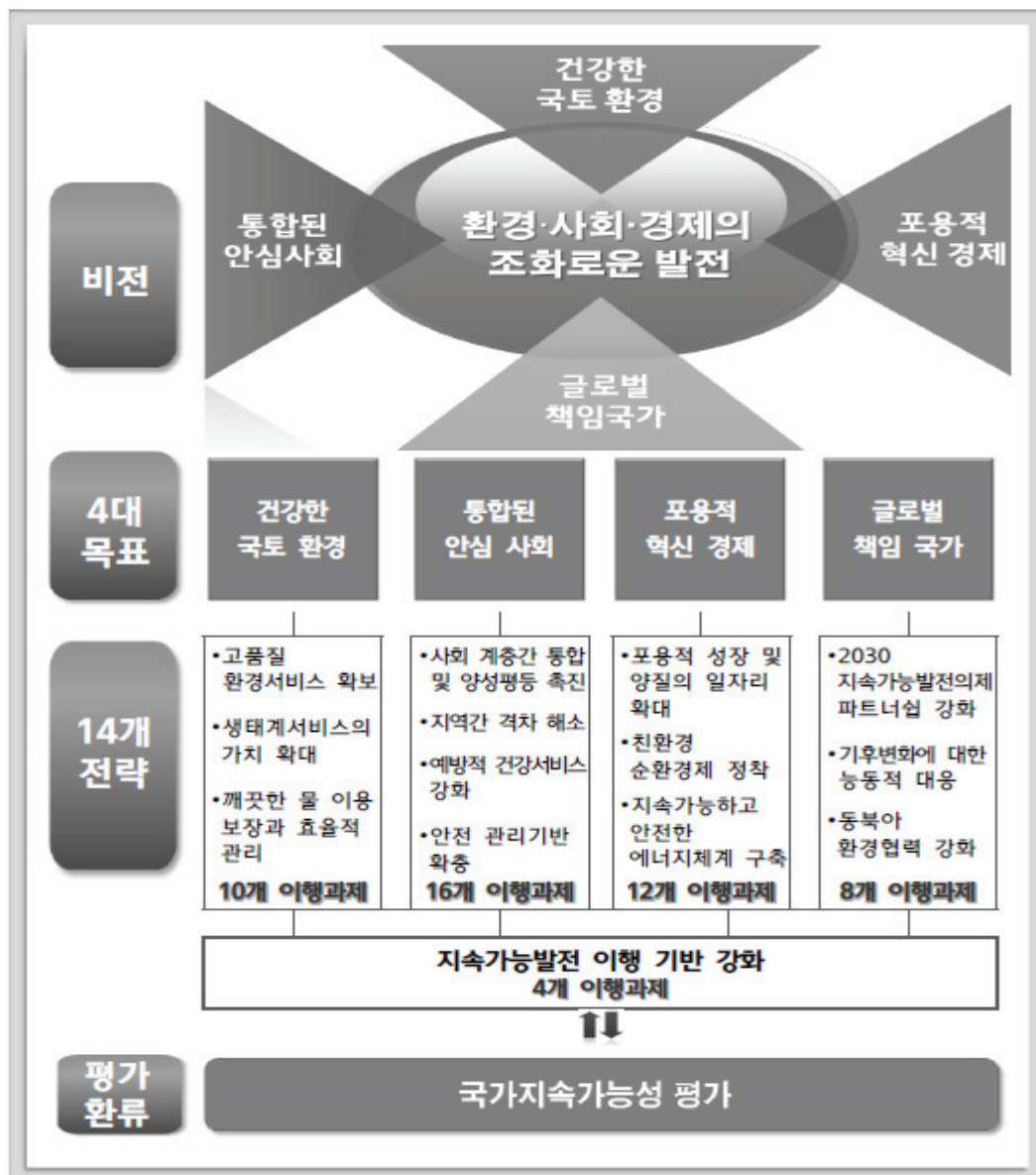
3. 한국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 현황과 한계점

1) 추진체계 현황(정책결정 중심으로)

- 현재 한국의 유엔 SDGs 이행은 명시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함
 - 동 계획은 지난 2006년에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마련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에 제3차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 계획에 유엔 SDGs를 반영하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국가’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14개 전략과 46개 이행과제를 제시함
 - 이 같은 기본계획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등 총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와 전문가 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법」(2010년 이전「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외부인사(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등 총 50명 이내로 구성됨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2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장관(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 및 경험자 등 총 50명 이내로 구성됨

〈그림 1〉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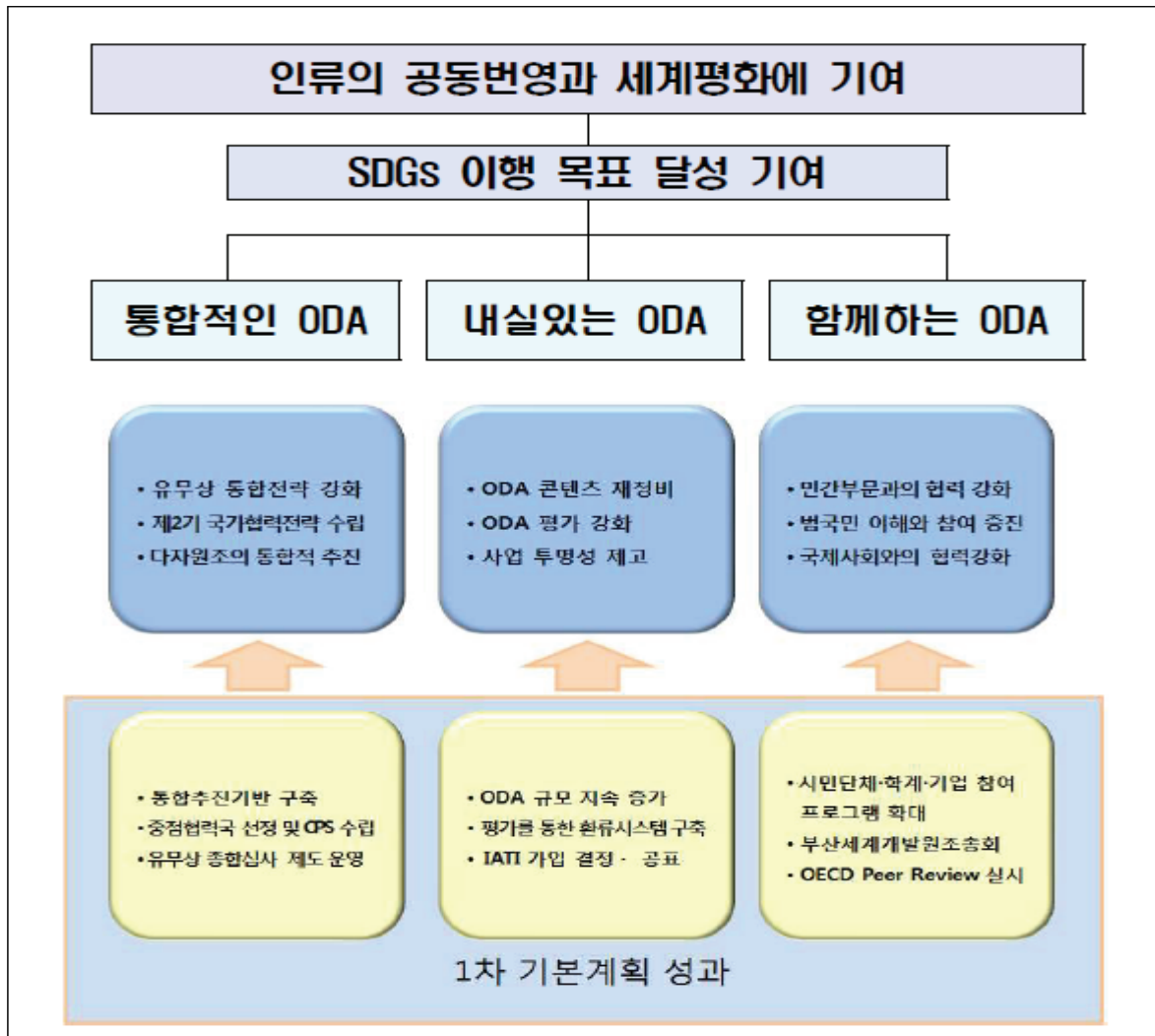


〈표 2〉 유엔 SDGs와 제3차 기본계획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5	양성평등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15	육상생태/자원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지난 2010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유엔 SDGs 이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동 계획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및 ‘SDGs 이행 목표 달성기여’를 기본 비전으로 하여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 하는 ODA’ 등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사업을 구상하여 실행할 예정임

〈그림 2〉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념도



- 동 계획은 주관기관(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종합하고 심의하여 확정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구성되는데,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행정부처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등)과 외부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됨

2) 한계점

□ 이 같은 추진체계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부재함
 - 현재 한국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 및 평가 등이 각 계획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둘째,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추진체계가 미흡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이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국제적 이행에는 국제개발협력차원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상호 배타적인지 보완적인지가 불명확함
- 셋째, 행정부처의 위상과 업무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과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보다는 상위에 있음. 따라서 각 위원회가 마련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 관련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이와함께 유엔 SDGs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경제발전 등 환경부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개발재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ODA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적

및 사적재원의 활용임

-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개발재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주로 ODA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임
- 다섯째, 정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나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제도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임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에 민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강함
 - 특히 한국은 2011년에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⁸⁾에 가입하고 <정부 3.0>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OGP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는 유엔 SDGs의 한 축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임

4. 한국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앞에서 제시한 현 한국 유엔 SDGs 이행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유엔 SDGs 영역과 이행에 부합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유엔 SDGs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의 지속가능,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됨. 이 중에서 거버넌스는 세 영역을 통괄하는 사항임
 - 또한 이의 이행은 국내적 차원의 이행과 국제적 차원의 이행이 있으며, 국제적 이행은 국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첫 번째 방안을 토대로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집행 및 평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체계는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이로

8)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국제 협력체임. OG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 예산 및 재정 공개, 2)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3) 공직자 재산공개, 4) 시민참여의 4가지 항목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해 사업 중복이나 부처간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유엔 SDGs 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유엔 SDGs 이행 기본계획(5년 단위)와 연도별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유엔 SDGs 이행은 전 행정부처를 아우르는 사안이므로,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이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유엔 SDGs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정책이 유엔 SDGs와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기여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임

○ 셋째, 개발재원 마련과 집행에 대한 제도화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개발재원의 확대임
- 이 같은 확대가 한국의 정책에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 마련과 집행 등에 대한 제도화된 정책과 집행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시민단체 및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시민단체와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원회 체계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단계에 시민단체 및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엔 SDGs 이행에는 대부분의 행정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정부위원회내 유엔 SDGs 관련 소위원회 또는 독립적인 상임 또는 특별위

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같은 사항을 입법화 할 경우 입법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음
 - 첫 번째 방안은 현행 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임.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임
 - 두 번째 방안은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임
 - 이 방안은 기존 법률에 우선하는 법을 제정하여 한국 유엔 SDGs 이행과 관련한 정책결정(기본계획 마련 포함)과 집행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임

5. 나가며

- 지난 2015년 9월 유엔이 SDGs를 채택한 이후 한국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주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유엔 SDGs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물론 자원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엔 SDGs 이행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지난 MDGs 시대와 달리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상승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지구의 미래를 위한 유엔 SDGs 이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실천이 필요함

종합토론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1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1. 지속가능한 개발

1)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현재 세대의 필요도 만족시키는 개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2) SDGs는 경제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통합, 거버넌스 등 4개의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6개의 구성요소(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로 구분할 수 있음.

(1) 목표 - 구체적 목표 - 지표의 삼중 구조 (2)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 (법적의무 없음) (3) 글로벌 성격으로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4) 다양한 국가별 상황, 능력, 개발 수준과 정책 및 우선 순위 고려.

(5) 구체적 내용은 ① MDGs 잔존 과제의 지속추진 ② 지구 시스템의 한계에서 초래되는 새로운 과제 (기후변화 식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와 작용) ③ 거버넌스의 문제로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존재와 참여(구체적 행동을 수반), 다양한 과제 해결, 새로운 생각·아이디어·네트워크 ④경제, 사회 및 환경의 통합적 성격 등의 핵심적 내용.

2. SDGs와 개별국가 -구체적 행동(입법)

1) 개별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 설정으로 , 국가의 구조 조정과 사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2) 국내법의 이행문제

-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강제수단 혹은 규제가 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필요.
- 광범위하고 다양한 목표와 지표를 포괄하는 입법적 기술, 이념, 사회현상의 반영(혼란)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임.
- 단순히 SDGs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SDGs 이념이 전제되는 입법 필요.
- 입법 형식은 (1) 특별법제정 (2) SDG 목표에 부합하는 개별법 개정 그리고 단순한 각각의

목표에 대한 정책수립이 있을 수 있음.

- 3) 입법상 고려요소는 매우 많지만 이해관계자간 조화 등을 고려하는 가버넌스 구축, 기존의 발상을 초월하는 법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을 할 것임.

3. 거버넌스 문제

1) 문제제기

- 가버넌스는 기존제도의 긍정적 변화를 촉구하고, 국가제도의 틀을 SDGs의 틀속으로 변화시키는 틀이 될 수 있음.
- UNDP 보고서는 SDGs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구조를 지원하는 데 가버넌스의 질이 필요 불가결한 역할. 가버넌스는 목적 지향으로 권위있는 사회 프로세스의 주도력.
- 제도적 완비를 위한 가버넌스는 1) 운용주체 2) SDGs의 구체적 목표의 실현 방안 3) 독립성 문제 4) 가버넌스 작동 이념 등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음.

2) 가버넌스의 기본방침 (좋은, 효과적인, 공평한 가버넌스)

- 좋은 가버넌스는 법 제정의 프로세스 및 제도 기반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참가강화, 투명성, 설명의무, 국민에 의한 정보입수 등의 가치 등을 의미함. 싱크탱크 경제연구기관,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서 작성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가버넌스는 공공정책 문제 해결 및 효과적인 가버넌스 실시를 위한 제도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임. 실시수단 또는 법의 지배 문제에 한정된 것을 초월하여 ODA, 기술이전, 특정 목표의 가버넌스(물관리 위원회, 환경관리)를 말하는 것임. 국가 차원의 행정 및 법적 능력의 측정 방법은 부존재함.
- 공평한 가버넌스는 법의 지배의 평등한 적용, 사회의 부 및 기회의 배분 등에 관련된 것임. 극도의 경제적 불평등 감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 예를들어 지니 계수와 같은 측정 지표가 존재함.

3) 이해관계자의 가버넌스 구조(SDGs Plattform);

-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소비자-기업-투자자-언론-교육기관
- 실행 매카니즘; 지원-정책제언-실행-감시- 홍보-사회적책임-평가

4. 새로운 생각·아이디어·네트워크-기업사례

1) SDGs와 기업

- 기업이 SDGs를 이용하는 근거는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판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규모의 과제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그것을 실현하는 힘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됨.
- 예를 들어, ①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 친환경 건물, 지속가능한 교통 촉진에 이바지 혁신적 기술 ②기존의 제조·가공을 대체하는 정보통신 기술 (ICT)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및 폐기물 적은 제품 생산 ③보건 의료, 교육, 에너지, 금융, ICT 등 40억명에 달하는 빈곤층 생활개선에 관련있는 대규모 시장과 미개척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수요의 충족.
- 국제적 공공·민간 투자가 SDGs의 실현을 위해 직면할 것임(사회적 책임).
- 향후 법정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승과 규제에 대한 대응력(탄력성).
- 사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제고.(① 전세계 수십억의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 ② 교육 강화로 숙련도 높은 직원의 육성, ③ 성별격차 해소 및 여성지위 향상을 촉진으로 구매력 확대 ④ 천연자원을 공급하는 지구의 허용 능력에 맞는 경제활동을 통한 지속적 성장.

2) Benefit Corporations

- (1) 미국의 30개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Benefit Corporations; SECTION 1. Part 13 (commencing with Section 14600)에 주법으로 제정되어 있음. Benefit Corporations 의 “특정공익”은 ① 저임금 또는 부족한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이익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② 사업의 일반적 과정에서 직업창출을 넘어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 ③ 환경보존 ④ 국민건강증진 ⑤ 미술, 과학 또는 지식진보의 장려 ⑥ 공익목적과 함께 법인에 자산흐름 증대 ⑦ 사회 또는 환경을 위한 다른 특정 이익성취 등임.
- (2) Benefit Corporation은 새로운 기업 형태로 회사의 법적인 상태를 말함. 의사 결정에서 비재무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신탁의무에 대한 다른 정의(주주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배임문제 해결),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고 문명퇴치, 환경보호 등의 사회문제임을 인식.

토론 2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윤경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사무국장·(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우리나라 SDGs 이행 추진체계 특징 및 문제점

1.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역량 중심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제도화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994년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운동 과제로써 <의제21>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1994년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역자치 운동과제로 <지방의제21>을 시민사회에서 적극 추진.
-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지방의제21>은 1995년 부산광역시가 처음이며, 이후 <지방의제21> 수립 지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총 240개 지자체 중 210개(87.5%)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 수립.
- 또한, 2015년 현재, 총 71개 지자체(33.8%)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지원 조례'를 수립.
- 국가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1996년 <의제21 국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고서에 그쳤다가, 2000년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심의, 조정, 평가 활동 등이 활발히 추진.
- 그러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1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3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6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이행계획>(7월)이 발표.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전개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정보공개 및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MGoS)와의 긴밀한 소통 협의는 부재.

- 향후, 실질적인 국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위상 재정립이 필요.

2. 국가 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통합 조정기구 부재

- SDGs 이행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녹색성장추진단, 총괄), 외교부(국제개발협력), 환경부(국내이행), 통계청(지표개발) 등 총 4개 기관이 담당(Yoon, 2016).
-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총 3개의 법제도에 따라 각각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2014.6),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2015.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2016.1)을 발표.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는 SDGs 언급이 없으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역시 2015.9월 말 확정된 글로벌 SDGs와의 연계 및 통합성은 부족(Yoon, 2016).
 - 환경부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에서 시인(환경부 보도자료 2016.1.12.일자).
-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을 총괄하도록 되어있는데, ‘녹색성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무조정실의 녹색성장추진단이 그 역할과 기능상 SDGs 이행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반대로, 지속가능발전법의 범주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전 부처와 관련된 것임에도 소관부서가 환경부라 그 역할과 기능상 또한 SDGs 이행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위상 재편과 그에 따른 행정체계 재조정 필요.
- 또한, 국가별 지속가능성 달성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SDGs 이행 원칙을 고려할 때, 국제, 국내의 이분적 이행체계를 통합, 조정하여 전체적인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아래 국제협력 및 국내 발전 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위 단위의 총괄기구 필요.

3.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조적 연계 부족

- 1995년부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지방의제21)와 2000년 설립된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풀뿌리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구축. 그러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강등된 이후,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역 지속가능발전 활동간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이 거의 단절.
- 이는, 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부 소통채널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담당부서인 정책총괄과가 아닌 민간단체 협력 업무 담당부서인 환경협력과라는 점,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적인 연계 부족이 요인.
- 20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이 명시화되었으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간 교류/협력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지 않는 한, 국가-지방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단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4. 환경부서 중심 행정담당체제로 인한 경제·사회분야 통합 제한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행정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대부분 환경부서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구축(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
-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가 환경부인 영향이 가장 크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기획정책총괄부서로 이관.
- 지역별로 의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부서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정계획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계획’ 통합은 미미한 실정.
- 이는, 1)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분야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지자체의 인식, 2) 환경부서의 행정구조적 한계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
-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 기획부서 행정담당체계 전환 필요하며, 이는 국가정부의 행정체계 개편과도 연동이 필수.

□ 제안

1. 국가 ‘발전’ 비전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1992년 이래 세계는 경제성장 중심 ‘개발’이 아닌 배분적 정의와 순환적 경제시스템에 방점을 둔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21세기 인류 생존 비전으로 제시.
- 즉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단순한 ‘국제협력’을 위한 레짐(regime)이 아니라 지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정치·경제·사회 발전 패러다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SDGs는 지구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법이자, 수단임.
-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글로벌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편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이 국정 전반의 ‘계획’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법들의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수립할 필요.
-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

2. 지방자치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핵심 원리인 ‘포용성(No one left behind)’, ‘참여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위는 ‘지역(local)/공동체(communitiy)’.
- 또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에서 천명한 지방자치가 우선이고 국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뒷받침 하는 것에 그친다는 ‘보충성의 원칙’과 일맥상통.
-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계개편 등 지방분권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필요.

3. 국가-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수립-이행-평가 의사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1세기 ‘협치(governance)’의 시대에서,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공동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전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통해서 가능.
-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원리.

-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광역-지방정부 단위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 이행,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구축 필요.
- 또한, 현재 개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각 정부부처의 각종 위원회 조직들을 재편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과정에 관련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이해관계자 그룹 : 최소한 현재 유엔에서 규명한 9개 주요그룹(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자, NGOs, 지방정부, 기업 및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 및 장애인, 노인, 재단 및 자원봉사 조직, 풀뿌리자치조직, 언론, 의회 등.
- 참여 플랫폼 형식 : 과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상설 참여 기구 설립 및 운영과 함께, 보다 확장된 소통 및 참여를 위한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논의 장 마련.

4. 국가 SDGs 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기구 설립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전 부처를 통합, 조정, 심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 설립 필요.
- 총괄 전담기구는 정부부처 기관장뿐만 아니라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정부 정책들을 통합, 조정, 심의하고, 국가-광역-지방을 연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역할 필요.

〈참고자료〉

- 김병완 (2016) “SDGs 국내 이행방안 : 국가 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회토론회, 2016.1.20.일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오수길 (2016) “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회토론회, 2016.1.20.일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2016) ‘유엔 SDGs 국가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일자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
- Denise YOON (2016) 'Starting Strong on the SDGs in Asia: Readiness in South Korea', Discussion paper of ISAP 2016 Plenary Session 2,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IGES)
- UN (2016)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9 July 2016 - 70/299.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A/RES/70/299),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299&Lang=E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토론 3

제2세션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I.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추진체계의 문제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추진체계의 해외사례에 대한 발표와 이행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이행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통합적 추진체계의 부재와 환경부 산하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의 SDGs 기획의 한계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발표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목표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고려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약간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II.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1. MDGs에서 SDGs로의 변화는, 그 목표의 개발패러다임이 “공여국-개도국 파트너십”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이동했다고 평가되고, 목표의 대상범위에 있어서도 사회개발, 경제개발, 평화와 안전, 환경보호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와 수많은 세부목표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DGs의 이행체계도 이러한 성격변화에 상응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의해야 할 점은, MDGs에서 SDGs로의 변화가 전통적인 “공여국-개도국 파트너십”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이 국내적-국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여국-개도국 파트너십의 주요추진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다자간 파트너십의 주된 추진기관의 이원적 체계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기관으로 추진체계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분담 및 협력을 통하여 오히려 공여국-개도국간의 전통적 개발협력과 보다 일반

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최소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실 소속 이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MDGs에서 SDGs로의 변화는 재원의 다양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ODA 이외에 다양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입법적 과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의 범위가 국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국내적인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재정만으로 전체 목표달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민간기업, 자선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동원가능한 적절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혜택의 제공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그러한 방향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추진체계에서 이원적 체계의 유지가 바람직하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법적 체계도 현행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2원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세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

사회: 이성훈 KoFID 국제위원장

발표: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의원실 및 시민단체

[발표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한 네가지 쟁점사항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한 네가지 쟁점사항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종합대책’ 발표이후 체계적인 시스템 정립과 양성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특별히 2010년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정 및 ‘OECD DAC’ 가입 등 선진공여국이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 이후 증대하는 ODA 규모와 참여기관의 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이 같은 빠른 성장의 길에 서있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질적으로 성숙해 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질적 성숙을 위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 2010년 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의 3조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음.

기본정신 (3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기본법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이 ‘빈곤감소’ 및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 ‘성평등실현’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내용과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같은 국익추구와 관련된 내용을 혼용해 담고 있음.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이 한국 ODA에서 기본정신이 되어 각종 사업의 목표나 지표설정의 주요 기준이 된 적이 있는지 의문임. 이는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했음을 보이기 위한 ‘레토릭’에 지나치지 않다 판단됨.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2005년 ‘국제개발협력 개선종합대책’에서부터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까지 10여년간

기본적인 체제가 갖추어지는 동안 정책의 내용과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철학과 이념을 규정하기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 이에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보편적인 가치추구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익 추구의 길에 서 있음.

- 식민지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되어 국익 추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기반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일부 서구국가 및 일본의 경우와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의 전례를 참고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도 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신을 심층적으로 논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함. 이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분절화 심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분절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선진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임.
- 아래 <표1>은 2015~2017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2015년 31개의 기관이 2조 733억원의 예산으로 1,055개의 사업을 수행하던 것이 2017년 예산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42개 2조 5,177억원 1,295개로 증대함.

<표1> 2015~2017년 ODA 시행기관, 사업수 및 규모 증대

구분	2015	2016	2017(요구안)
시행기관	31개	44개	42개
사업 수	1,055	1,230	1,295
ODA 규모	(예산) 2조733억원	(예산) 2조1,905억원	(예산) 2조5,177억원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자료에 제시된 당해년도 예산계획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표2>는 각 부처와 기관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2017년 예산으로 심의를 요청한 내용임. 이중 100억 원 이상의 ODA를 계획하고 있는 부처는 1위 수출입은행(9,600.9억원), 2위 한국국제협력단(7,012.9억원), 3위 외교부(3,220.4억원), 4위 기획재정부(1,314.9억원), 5위 교육부(796억원), 6위 보건복지부(530.7억원) 7위 농림축산식품부(266.4억원), 8위 산업통상자원부(265.8억원), 9위 농촌진흥청(251.5억원) 10위 인사혁신처(244억원), 11위 문화체육관광부(212.3억원), 12위 미래창조과학부(168.2억원), 13위 국토교통부(159.6억원), 14위 산림청(149.8억원), 15위 행정자치부(116.8억원), 16위 환경부(115억원) 등

16개 부처 및 기관임. 2016년 예산 기준 ODA규모가 100억 이상이었던 기관이 14개였던 것에 비해 2개 기관이 증대함.

〈표2〉 2017년도 기관별 ODA사업예산 현황(요구기준)

[총괄] 총 42개 기관(지자체 9개 포함)이 1,295개 사업 추진 (2조 517억원)

(단위 : 억원)

연번	시행 부처(기관)	2017년			비 고	
		양자	다자	합계	사업수	사업명
1	국무조정실(본부)	8.2	-	8.2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7.1	-	67.1	18	국제 학생 학위과정 초청연수 등
2	기획재정부(본부)	84.9	1,230	1,314.9	3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수출입은행(EDCF)	9,800.9	-	9,800.9	129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3	교육부	796.0	-	796.0	58	글로벌 코리아 스텝라실 등
4	미래창조과학부	155.7	12.6	168.2	46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등
5	외교부(본부)	2,335.3	885.1	3,220.4	55	해외긴급구호 등
	한국국제협력단	7,012.9	-	7,012.9	557	개도국 제도 구축사업(DEEP) 등
6	법무부	18.0	-	18.0	7	개도국 법제정비 지원 등
7	행정자치부	116.8	-	116.8	27	개도국 새마을운동 초청교육 등
8	문화체육관광부	212.3	-	212.3	23	문화동반자사업 등
9	농림축산식품부	179.5	86.9	266.4	39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등
10	산업통상자원부	251.1	14.7	265.8	34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11	보건복지부	339.8	190.9	530.7	36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 등
12	환경부	71.7	43.3	115.0	19	UN 지속가능발전센터 부설금 등
13	고용노동부	25.3	54.7	80.0	13	한-ILLO 협력사업 등
14	여성가족부	23.1	49.8	72.9	9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15	국토교통부	158.0	1.6	159.6	15	마스터플랜 수립 등
16	해양수산부	58.5	-	58.5	10	현안국과의 협력(ODA) 등
17	국민안전처	12.0	-	12.0	2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 등
18	인사혁신처	244.0	-	244.0	1	국제기구 고용유직 제도운영
19	국가보훈처	1.8	-	1.8	3	참전국 등 의료봉사활동지원
20	식품의약품안전처	29.7	-	29.7	5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 등
21	관세청	41.2	19.7	60.8	14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등
22	통계청	21.9	-	21.9	7	통계역량강화 사업 등
23	대검찰청	6.6	-	6.6	3	국제마약퇴치지원 등
24	경찰청	37.2	-	37.2	2	우간다 치안역량 강화 과정
25	문화재청	31.3	1.6	32.9	15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 등
26	농촌진흥청	248.1	3.4	251.5	33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KOPIA 다자간 협의체 등)
27	산림청	146.8	3.0	149.8	14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28	특허청	16.5	0.2	16.7	5	WIPO 국제분당금 등
29	기상청	30.4	0.7	31.1	6	피지 통합해안방범에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30	헌법재판소	0.6	-	0.6	1	개발도상국 등 헌법재판기관 초청사업
31	공정거래위원회	1.5	-	1.5	3	UNCTAD 전문관 파견 등
32	국민권익위원회	1.1	-	1.1	5	반부패기술지원 등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6.2	-	56.2	8	선거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등
34	지방자치단체(9개)	114.8	22.1	136.9	42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합 계		22,557	2,620	25,177	1,295	

1) 양자협력 중 유상협력은 수출입은행(EDCF)에서 만 시행(9,172억원)

2)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316억원, 양허성기금 1,528억원과 UN 및 기타기구 분야 국제법권획득기여금 265.3억은 ODA 총규모에는 포함되나, 기관별 사업예산에는 미포함

3) 다자협력 중 UN 및 기타 기구 지원액은 ODA 계상비용에 따라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을 포함

출처: 2016년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6-1호)

- 많은 정부부처, 시행기관이 많은 규모의 ODA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 특별히 <표3>과 같이 무상기관의 분절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 보건, 농업 등 유사한 분야에서의 유사내용의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추진됨으로 인해 유사 중복의 문제가 발생함. 즉, 한 국가에서 타 부처 기관이 상호 조정되지 않고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표3> 2012~2017년 한국 무상ODA의 내용

년도	ODA규모	시행부처/기관	국가	사업수
2012년	7,078억원	27	55	649
2013년	7,569억원	25	73	671
2014년	7,890억원	27	72	816
2015년	8,447억원	31	66	859
2016년	1조 542억원	43	73	1,012
2017년 (예산)	1조 3,385억원	42	74	1,101

출처: 제 11차, 13차, 17차, 20차, 23차,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안건을 기반으로 저자가 작성

- 2013년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매년 정부는 외교부 중심으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유사 중복사례를 조정 및 사업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가 제시하는 사업자료의 한계로 엄밀한 유사중복 판별 및 적격성심사는 어려움에 있음.
- 무상원조 사업 시행 부처 기관의 엄밀한 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를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엄밀한 유사중복 사례 조정 및 사업사전평가를 통해 분절화로 인한 현장에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효과성 저하를 방지해야 함.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상원조 통합의 길을 밝아야 함.
- 또한 현재 분절화로 인한 문제해소를 위해 작동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엄밀한 사업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 분야전문가가 포함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3. 한국 ODA는 충분히 투명한가?

- 정부는 2015년 국제적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가입했고 2016년 13개 기

본항목을 공개했음.

- 그러나 한국이 공개한 13개 항목은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일부에 해당함. 기관정보 7개 항목 중에서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 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음. 32개의 사업정보 중에서 공개한 항목은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에 그침.
- 시민사회는 이 정도로 공개된 정보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는 원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함. 참고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오피서버 국가인 일본은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¹⁾
- <표4>과 같이 2013년부터 국제NGO 네트워크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 결과를 보면 한국원조기관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표4> 2010~2015년 한국 원조투명성지수(ATI) 변동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전체	KOICA	EDCF	KOICA	EDCF	KOICA	KOICA	KOICA
등수	26	22	43	41	37	30	34	41
점수	-	-	-	-	-	27.9%	36.9%	26.1%
전체국가수	30	58		72		67	68	46

출처: ODA Watch 소식지 owl을 기반으로 저자가 작성

- 한국 원조시행기관별로 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정도만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부처 및 기관은 매우 접근성과 공개 정보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는 ODA 자금 조성자인 일반 국민들로부터 ODA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판단됨.

1) 2016년 8월 12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논평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4.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SDGs 중장기 이행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2001년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이행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인 전략과 방안은 없었으며, 한국 ODA가 MDGs 몇 번에 어느 정도 규모의 ODA를 집행했는가 정도의 내용만 있음.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왜 MDGs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이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음. 이러한 내용이 2015년 새로 제정된 SDGs에도 발생할까 우려됨.
- 현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종합적인 SDGs 중장기 이행방안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2016년 개최한 제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2017년 전체 ODA중 SDGs 연계 사업 규모는 약 1조 9,042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 차지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수준의 내용보다는 이보다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SDGs 중장기 이행 방안에서 몇 번 목표의 구체적 세부목표에 한국 ODA가 어떻게 기여하며, 이를 다양한 시행부처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표5〉 2017년 ODA사업예산(요청사항)과 SDGs 17목표와의 연계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수 (개)	168	130	118	133	18	61	20	58	150	17	27	2	35	5	11	111	54
규모 (억원)	2834	1654	2210	2492	134	2397	873	427	4422	47	206	14	239	37	118	771	201
비중 (%)	14.9	8.7	11.6	13.1	0.7	12.6	4.5	2.2	23.2	0.2	1.1	0.1	1.3	0.2	0.6	4.0	1.1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6-1호)

-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이행 마스터 플랜’을 의결했음. 이는 대통령이 2015년 UN개발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천명한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구체화한 것임. 이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인 SDGs 이행방안을 구성해야 함. 참고로 일본은 총리 산하에 SDGs 실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발표2]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

권율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머리말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정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음.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합의된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integrated and indivisible)을 강화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
-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SDG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ODA 추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주요 국제공여기관들은 SDGs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고, 한국도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추진체제 개선 시급
- 특히 우리나라 ODA 추진체제는 상환 유무에 따라 유·무상 원조기관이 분권화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개도국 지원이 어떤 수단으로 제공되었는지 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공여국의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유·무상원조의 통합적 연계와 추진체제 개선이 시급함.
- Post-2015 이후 개발목표 범위와 대상이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2. 한국 ODA 추진체제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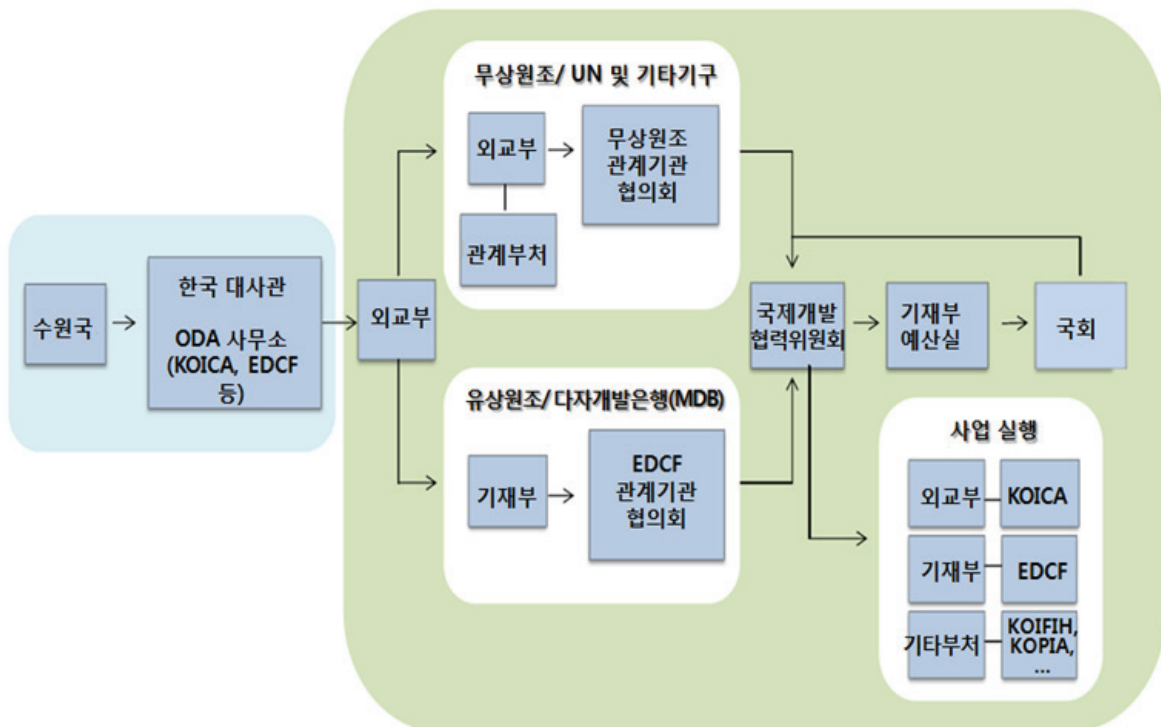
□ 일원화된 정책시스템 부재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ODA 사업의 주무부처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협력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위탁, 집행하고 있음.
- 최근 ODA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기관별 관심 증가로 일부 구체적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거나, 협업이 곤란한 단독형(stand-alone) 사업을 추진, ODA 효과성 저하
 -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체계적인 방향 수립과 제도개선에 있어 현재의 분권화된 원조시스템은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에 취약
- 이에 따라 유·무상 원조 분절화로 인해 부처간 협업이 어렵고, 사업 간 연계성 및 원조 효과성 저하
 - 무상원조의 경우 다양한 부처의 참여는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을 국제개발협력에 활

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나, 부처별로 예산은 전체 ODA 예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기술협력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절화된 ODA 사업추진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어렵고, 사업발굴·선정단계에서 사업간 연계를 위한 기관과의 정보공유·참여에 취약하며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도 미비
- 우리나라 ODA 사업은 매년 천여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증여와 차관,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이 상호연계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 유·무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방식 결정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수원국의 지원요청에 적정 지원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기관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 총괄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 n-2 예비검토제를 통해 사업간의 중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정력 제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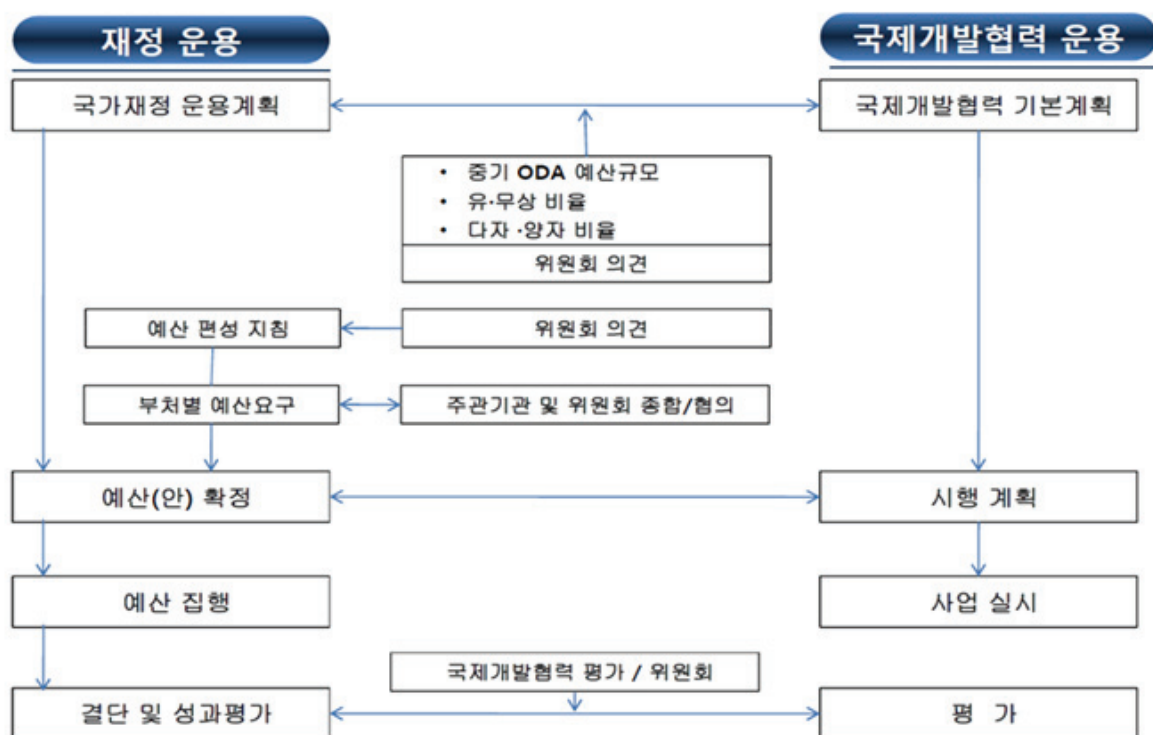
〈 ODA 추진절차와 사업선정 과정 〉



□ ODA 사업의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의 제약성

- 유·무상원조의 통합된 국별 프로그램을 토대로 자금배분기준과 이행계획(operational plan)을 작성하고, 수원국과 정책대화를 통해 원조연동계획(rolling plan)을 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원가능분야와 사업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발파트너십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원조 효과성 제고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3-5년간 다년간 예산배분이 허용되어야 함.
 - ※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다년간 예산 책정 가능
 - 중장기 계획수립과 함께 다년간 예산배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책정의 안정성 확보

〈정부 재정운용과 ODA 예산절차〉



- 대부분이 프로젝트 사업중심으로 사업의 성과(outcome) 보다는 산출(output)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조정결과와 예산편성 과정의 연계도 부족하여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예산실)간에 업무협조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미비
 -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이 수립되면 「ODA 기본계획→실시계획→예산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예산심의 강화 필요

- 성과중심의 ODA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방식 개선과 차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주요 선진국은 개별사업의 예산배정 여부보다는 총액배분방식(Top-down) 채택하여 성과관리의 유인이 있으나, 한국은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산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상향식(Bottom-up)이어서 ODA 사업의 효과성 저하

□ 민간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 개도국 원조사업에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프로그래밍(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미흡
 - 개발 NGO,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KOICA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제안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정부발주 위탁사업으로 입찰수주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한적임.
- 최근 국제사회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기존의 개발협력사업을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SDG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함.
 -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비용분담을 원칙으로 NGO와 민간기업이 ODA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ODA 사업이 개도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ODA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음.
 - NGO, 대학,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청주의에 입각한 정부주도의 입찰사업보다는 다양한 지원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G2G 사업은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내용과 질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원조사업의 효과성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협력사업의 경우 후속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체제 수립이 필요함.

□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미흡

-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체제 개편을 통한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강화가 시급함.
 - 본부에서 현지사무소로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재외공관에 개발협력담당관 파견, 원조태스크포스 운영 등 원조분업 및 조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현지사무소로 권한을 넘겨, 현지에서 주도되는 선진공여국 회의를 통해 원조분업을 위한 협력체제 참여
 - 현지사무소가 단순히 본부를 지원하는 기능에서 수원국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실질적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
 -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발굴 및 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사업추진의 권한을 현지사무소로 이양. 본부는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현장중심의 원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SDG 이행을 위한 수원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타 공여국과의 조화 및 협력을 확대
 - 중점지원국에 설치된 현지사무소의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수원국 현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3. 대외원조정책의 개선과제

□ 원조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원조추진체제를 수립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함.

- 유·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부처간 정책목표가 달라 ODA 정책입안 및 추진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간 조정기능을 맡고 있으나, 정책입안 및 조정을 위한 적정인원 및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는데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원조체제를 수립하고, ODA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책체계 및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함.
 - 현재 각 부처는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ODA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이 낮고, 부처간 정책조정이 취약하여 집행단계에서도 ODA 시행기관의 협력기반 취약

- 2030년을 목표로 SDG 이행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예산 확대에 걸맞는 별도의 원조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조 정책 및 집행의 일원화를 위해 정책 및 집행기능의 통합과 조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조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효과적인 SDGs 이행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함.
 -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 범부처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조정 및 범정부차원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SDG 이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특성상 정책일관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 구성 필요
 -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 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종합토론

이철호 비서관(원유철의원실, 새누리당)

김형호 비서관(김용태의원실, 새누리당)

유경선 전) 보좌관

신재은 부장(KCOC 정책센터)

토론 1

이철호 비서관(원유철의원실, 새누리당)

[illegible]

토론 2

SDGs의 한국적 실천으로서의 ODA

-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위한 제언 -

김형호 비서관(김용태의원실, 새누리당)

■ MDGs의 채택배경과 SDGs로의 전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전 지구적인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지구촌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절대빈곤의 감소,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보건 분야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다. MDGs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수립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MDGs의 목표아래 눈부신 성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7억 명 이상이 하루 1.9달러(세계은행 절대빈곤 기준선)로 살아가고 있는 등 절대빈곤은 여전히 인류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기아, 식량부족, 질병, 교육불평등, 성차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제70차 유엔총회(15.9.)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게 되었다. SDGs가 전혀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MDGs의 목표들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DGs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류의 인식적 차원에 변화 기제가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면 SDGs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와 단계들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DGs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망라하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즉, SDGs는 실질적인 실행 및 수행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MDGs와 SDGs의 한국적 실천: ODA 추진 및 발전적 논의

SDGs 채택의 취지와 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다. 특히, 발표자의 한국 ODA 추진체제와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적 차원의 인식개선 및 실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발표자는 한국 ODA 추진체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원화된 정책시스템 부재’,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의 제약성’, ‘정부-민간의 연계성 부족’,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s의 실현을 위한 한국 ODA의 추진제와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대국민적 인식적 전환의 차원이다.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에게 ODA라는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있더라도 국내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차원에서 해외원조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이 SDGs에 대한 개념과 목표에 대해서는 더욱 생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발협력 및 원조에 관한 전국민적인 주목과 인식전환의 계기, 실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참여형 포럼과 논의의 장을 전국 순회형식 혹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가칭 개발협력주간’을 통해 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ODA 규모 및 사업총액에 대한 논의를 넘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목표 달성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¹⁾ 물론 목표 달성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이기는 하나 ODA에 대한 원조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과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간, 다자간 협력 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ODA원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전국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내적 빈곤에 대한 고민과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즉, 증액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1) 2011년 기준 0.12%로 DAC 회원국의 2011년도 평균 0.31%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5년까지 0.25%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외교부 홈페이지, ‘우리나라 ODA현황’)

[한국 ODA원조 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ODA(A+B)	1,325	1,597	1,755	1,857	1,911
(ODA/GNI, %)	0.12	0.14	0.13	0.13	0.14
양자간 협력(A:a+b)	990	1,183	1,310	1,396	1,458
- 무상원조(a)	575	715	809	884	898
- 유상원조(b)	415	468	501	512	560
다자간 협력(B)	335	414	446	461	453

출처 : OECD「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셋째, ODA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 ODA펀드’를 조성을 제안한다. 이는 가입자에게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금의 원금은 보전하되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ODA 재원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가입동기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원마련 방식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국내경기 불황의 시대에 국가차원의 일방적인 재원마련에 기대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재원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적인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개발원조의 수혜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력 및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 심적, 경제적 부채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ODA 정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에 관한 학계, 정부, 민간단체들의 수고와 헌신은 국가의 품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논의와 실행이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수고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개발협력 및 원조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아,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의 말처럼 아직은 미미하지만, ‘한국ODA가 지구를 구하는 장엄한 시작이자 실천’이 되길 소망한다.

토론 3

ODA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언

유경선(전 보좌관)

한재광 대표의 발제문 관련하여 무상원조의 분절성과 권율 선임연구위원의 전담기구 유무상원조의 이원화와 전담기구 설치 제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원화와 전담기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처이기주의가 강한 행정부에서 유무상원조를 일원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 연계성을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한국 ODA사업의 근간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동법은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며, 국무조정실에는 심의의결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음. 그러나 동 위원회는 상시기구가 아니며 집행기구는 더더욱 아님.

전담기구 관련하여 해당 전담기구를 부처청 단위의 조직으로 한다면, 국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며,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것임.

우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상설조직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공무원조직으로 집행력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조직으로 하고, 산하에 민간 집행조직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집행조직도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비상설로 심의의결기구로 두고, 학술진흥업무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연구재단과 같은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각 부처가 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과 기획협의, 자원배분, 평가,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연구재단모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소관부처로는 총리실 산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총리실 산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담기구가 외교부 산하로 될 경우 우리나라 외교부 특유의 문화로 인하여 협업과 신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코

이카라는 조직과의 혼란성도 있을 수 있음.

ODA사업의 투명성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ODA를 선심성 사업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임. 또한 ODA사업을 부처가 직접하기 보다는 부처 산하 단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한 사업성과보다는 부처의 입맛에 맞거나 사업성이 용이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료됨. 무엇보다 해외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업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음. 제도적으로 국제협력기본법 자체에 예산, 사업집행 그리고 성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의 투명성부분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공시규정제도를 신설하여 사업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면 될 것임.

결론적으로 ODA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해법에는 구체적이지 못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하다못해 특수법인도 통상 설치법이나 법적근거가 있음을 감안할 때, 막연한 전담기구 논의보다는 해당 전담기구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법인 설치법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토론 4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토론문

신재은(KCOC 정책센터)

한재광 코피드 운영위원장님과 권을 KIEP 박사님께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쟁점과 과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민관협력 중 NGO와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 논의

- **(국제추세)**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 추세임.
 - 2015년 UN 총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주요 목표로 포함함(SDG 17번 목표).
 - 2011년 OECD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우리나라 및 선진공여국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OECD 동료평가)** 2012년 한국 ODA에 대한 OECD 동료 평가 내용에는 시민사회와의 협의, 소통, 참여 강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라는 조언이 담김. 또한 원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ODA예산이 민간에도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됨.
- **(한국 민관협력규모)** 정부는 2010년 1차 ODA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민관협력예산을 10배로 확대하여 900억 수준에 이르는 목표를 세웠음.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현실

- **(한국 민관협력현황)** 국제개발협력예산(ODA)에서 NGO를 통한 협력은 OECD DAC 공여국(19개국)이 ODA예산의 10%이상 협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2% 수준임. 2010년 1차

ODA기본계획에서 2015년까지 민관협력예산을 10배로 확대하여 900억 수준으로 맞추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고 현재 규모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 정부는 2016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 민관 협력사업 예산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함. 보조금법 하에서의 민관협력사업은 현장이 아닌 한국 중심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민관협력사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한국정부의 ODA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보조금 지급전 소급 미적용으로 계속사업의 현지 고용 인력의 인거비와 임차료 조달 문제로 현지법 위반, 방글라데시 임산부 산전/산후 지원 사업의 경우 올 초 2개월 동안 산소, 전력, 의약품 등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질에 큰 타격을 줌.

* 현장사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보조금체제에서는 사업의 연장 및 이월의 여지가 축소되어 개도국의 특수 상황 - 천재지변, 치안악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개발사업 수행에 차질있음.

* 현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전자 인보이스 발행, 영수증에 대한 개념차이 미인정, 간이/백지 영수증에 대한 제한, 은행거래 중심,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요청 등 한국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을 동일 적용함.

* 행정적 부담 증가시켜 개발효과성에 집중 어려움

기존 회계보고 외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D-brain) 추가 등록 요구, 회계지침 공식 영문 번역본 부재로 단체별로 자체 번역 활용, 영문 사업제안서/보고서 방식 중단

* 현지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 존속여부 불투명

KOICA는 2012년부터 현지 중심의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현지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함.

출처: KCOC. 보조금 전환에 따른 현황 파악 조사 (2016년 9월)

- **(소통의 부재)**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가 어떤 절차나 의견청취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되어 정부-시민단체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 **(파트너십 이유)** OECD 공여국들은 NGO가 현지 주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취약국에서도 활동 가능하다는 점 및 공여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NGO와 협력하고 있음.

- **(파트너십 규모 및 목표)**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선진공여국은 국제개발협력예산(ODA)의 30%이상을 NGO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4개국 중 19개국은 ODA예산의 10%이상으로 협력하고 있음. 선진공여국은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원조정책 보완,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공여국 인지제고, 굿거버넌스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활용함.
- **(다년간 협약 프레임워크)** 11개의 공여국들(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은 시민사회단체 원조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다년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 안에 맞추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그 중에서도 특히 파트너 국가들의 시민사회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함.
- **(개발협력인력 육성의 장으로 활용)** 선진공여국은 개발협력 인력 육성의 장으로 개발NGO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미국: 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 육성
 - 독일: 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NGO포함)과 개발도상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이 매우 높은 전문인력 풀(pool) 육성

■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

- **(모금 현황)** 2015년 기준 127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수입 총 합계 금액은 1조 5천 8백억원임. 이 중 개인후원금이 7천 1백억원으로 가장 큰 모금처였으며, 총 개인후원자수는 약 316만 명, 이 중 개인 정기후원자는 약 258만명이었음.
- **(국제개발협력 해외사업 현황)** 개발도상국을 위한 NGO 국제개발협력 사업비는 약 4천 9백억원임.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1천 5백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한 수치임. NGO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중 정부지원은 3백 6십억원으로 7.5%를 차지함. 한국 개발NGO들은 110개 국가에서 2,17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중 최빈국 지원현황은 1천 9백억원으로 전체 해외사업비의 약 40%를 지원하고 있음.
- **(개발NGO 인력현황)** 개발NGO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인력의 상당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인력 수요처이며, 현장에서 개발협력 실무 전반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개발NGO근무자 9,599명, 개발협력업무 담당자는 1,472명임.
 - 해외인력은 4,447명이었고 이중 한국인의 비중은 20%(889명)임.

- 2015년 정부 WFK봉사단/ODA인턴 경험자의 개발NGO 근무자도 295명에 달함.

■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하여

SDGs목표는 현재의 체제와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움. 민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개발협력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빈곤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 최빈국 협력, 현지 시민사회 육성 등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하는 청년층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봉사단원, ODA인턴 등 개발협력 진입단계의 정책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장을 활용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게다가 개발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부분도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이러한 점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변혁적인 사고와 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프레임워크는 철저히 현장중심이자, 동시에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여 구축하여야함.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KCOC. 2016, 「2015 한국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OECD/DAC 2011, "How DAC work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제4세션]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사회: 김영일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발표: 김지영 교수(송실대학교)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월드비전 옹호팀장

토론: 장혜영 교수(중앙대학교)

김성규 교수(서울대학교)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발표1]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

김지영 교수(송실대학교)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¹⁾

김지영 교수(승실대학교)

I.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엔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계승할 새로운 전지구적 개발 목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발표하였고, SDGs 시대는 2016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²⁾ 본 논문에서는 국제개발 담론의 주요 변화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SDGs 시대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독립과 함께 많은 신생 국가들이 국제 체제에 등장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소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이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다양성을 도외시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저개발’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의 개발도상국들의 증대와 함께 개발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도 발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개발 담론을 이끌어 온 주요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담론 주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국제개발 담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발에 대한 정의와 대상 그리고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떠한 특징적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개발담론의 주요 변화들이 국제개발협력 레짐과 SDGs 시대의 도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앞으로 SDGs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국제 개발 담론 주체의 변천

국제개발 담론은 다른 여러 국제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제환경과 주요 행위자(actor)의 상호작용

1) 본 논문은 한국국제협력단 협찬 2016년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됨.

2) SDGs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엔 웹사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참조.

용에 기반 하여 발전해 왔다. 국제개발 담론을 이끌어 온 주체 면에 있어서 특징적인 변화로는 먼저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목소리 강화, 그리고 국가 중심의 개발 논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탈 서구 중심 개발 담론 시대 부상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가장 최초의 개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근대화이론부터 케인지주의, 신자유주의 경제개발론 등 국제개발의 주요한 이론들 대부분이 주로 서구의 개발 경험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2차 대전 이후 국제개발 담론을 이끌어 온 주체는 주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었다.³⁾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은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경제 및 개발에 있어 가장 주요한, 그리고 강력한 정책적 힘을 펼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여러 저개발 문제는 주로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며, 특히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여러 시장 왜곡 문제가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시장 자유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에 기반 한 개발이론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힘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1970년대 말 이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주요 정책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미국과 선진 유럽 국가들이 국제개발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개발 영역이 서구의 독점적 무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들의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유엔 등 국제기구가 구심점 역할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에 대항하는 비동맹국가들, 즉 제3세계 국가들이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비동맹운동으로 힘을 합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국제관계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과 주요성은 점차 증대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는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한 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공은 서구 중심의 개발 담론에 주요한 도전이 되어 왔다. 일본을 선두로 197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의 국가들, 즉,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 경제개발에 성공하였고 뒤를 이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중국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3) 1960-70년대 많은 지지를 받았던 마르크스주의에 기반 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 학자들이 이끌어온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당시 많은 개도국의 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위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취해오던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를 거치면서 채무 위기에 직면하자 위 이론들도 함께 비판을 받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대안적 모델로 부상하게 되었다.

4)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IMF/WB의 대표적인 원조조건, 즉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종종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는 신고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긴축재정, 정부지출 재정부, 세금 및 환율 개혁, 금융 및 무역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를 포함한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약진은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물론 이 지역 국가들의 개발 경험은 매우 다양하고 특수한 국가-사회 관계와 국제 환경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이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며 최소한의 국가를 주장했던 데 반해 발전국가론은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주장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발전 국가론은 국가가 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때로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유치산업 보호, 전략적 산업화 등)을 펼쳐 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모델이라 하겠다.⁵⁾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약진을 소개했다.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국제개발담론 형성에 있어 정책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며, 실제 오늘날 주요 국제개발기구(IMF와 WB 포함)들이 발간하는 여러 보고서와 정책제언은 아시아의 발전 모델과 개발경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⁶⁾ 국제개발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서구 국가 외에 여러 비서구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국제개발 담론에 있어 더 이상 서구 중심만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개발 담론의 공존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국제개발 담론 주제 면의 변화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및 역할 강화를 꼽을 수 있겠다. 냉전의 붕괴는 세계화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세계화를 지지하는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 (2000)에 의하면 냉전체제는 세계화 체제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세계화에 대한 주요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솔티(2004)에 의하면 세계화란 “사람들간의 초국경적인, 초영토적인 연결망의 증가”이고 호름과 소렌슨(1995)에 의하면 세계화란 “국경을 초월한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의 심화”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면에서의 국경을 초월하는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 주요한 세계 정치적 변화로서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정치체제의 약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5) 발전국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Amsden (1992); Gereffi and Wyman (1990); and, Wade (1992) 등 참조.

6) 이 부분은 2016년 9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 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 개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n Development: Past and New Interpretations)에 참가한 호주 국립 대학교 Stephen Howes의 발표에 기반 함.

세계화 시대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글로벌 문제가 등장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정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국가 단체, 특히 국제기구와 국제비영리단체(INGOs)가 국제체제의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은 국가중심의 국제체제로부터 다중심구조(polycentrism)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Scholte 2004).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은 국제 개발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선적으로는 국제개발 담론 자체의 활성화를 들 수 있겠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개발 담론과 동학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비영리단체들은 개별 국가 내의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를 세계적 차원의 어젠다로 끌어 올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유엔은 2000년 MDGs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천명했고 2016년 SDGs 시대 개막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문제로서 저개발 문제를 홍보하고 천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은 개발 담론에 있어 인도주의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여러 국제비영리단체들은 빈곤국들과 빈곤층들에 대한 정보 및 상황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가들을 감시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 담론에 있어 인도주의의 목소리 강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담론 주체의 변화를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았고 그 특징으로 탈 서구 국가들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및 역할 증대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국제개발담론 주체의 변화가 개발 담론, 특히 개발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접근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국제개발 담론의 주요 변화

국제개발 담론은 매우 포괄적인 주제로서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널리 공유되는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본 논고에서는 개발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의 정의와 대상 또는 단위, 그리고 접근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1) 개발의 정의: 경제 성장에서 ‘자유’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 담론은 오랫동안 서구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가장 먼저 산업화, 근대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는 개발을 근대화,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 담론도 개발은 곧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경제성장 수준, 즉 GNP 또는 GDP는 한 국가의 개발의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발 담론의 주체로서 비서구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여러 다양한 개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고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에 대한 협소한 정의는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개발의 정의에 대한 담론은 경제 성장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개발’의 정의와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로서 경제적 척도(1인당 GNI)뿐 아니라 보건(출생 시 생존률)과 교육(교육수혜기간평균과 예상교육수혜기간)을 포함하고 있다.⁷⁾ 또한 한 국가의 GNP 성장이 반드시 빈곤 격차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개발과 성장, 그리고 빈곤 축소의 관련성을 강조한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라는 개념이 오늘날 국제개발 담론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의 확산에는 학문적인 연구의 뒷받침도 많은 역할을 했다. 여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연구들이 개발을 경제성장으로만 이해하는 서구 중심의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으며⁸⁾ 특히 1999년 센(Amartya Sen)은 Development as Freedom을 발간, 개발을 ‘자유’로, 또는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접근방식을 매우 설득력있게 주장했다. 센에 의하면 개발은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Sen, 1999:3).

이와 같이 오늘날 개발은 협소한 경제 성장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정의의 변화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개발의 대상 또는 단위 면에서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7) 유엔 인간개발리포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유엔 공식 웹사이트 <http://hdr.undp.org/en> 참조.

8) 예를 들어, 윌리엄스 외. 저술. 손혁상 외 역. (2016) 참조.

2) 국가개발에서 인간 개발로

대부분의 개발 이론에서 분석 단위는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개발의 대상과 분석단위는 국민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국가총생산의 규모 등이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사회는 개발의 대상과 단위를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소위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 시대 이후 증대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은 인도주의와 개발 담론의 부활기를 이끌었으며 특히 국제개발 담론에 있어 인도주의의 강화는 인간 개발의 개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들이 축적되고, 국제개발 담론에 이러한 개도국의 상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 중심의 개발에 대한 한계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주의(clientelism) 정치 문화에 기반하여 사회의 일부 인종, 지역, 민족 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탈국가’ 또는 ‘실패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다 (Haynes 1996).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의 성장 여하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은 ‘저개발’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⁹⁾ 극단적인 경우는 국가가 자국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¹⁰⁾ 이러한 개도국의 상황은 개발의 단위로서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 개발이라는 개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다룬 유엔의 HDI나 센(2004)의 ‘자유로서의 개발’이라는 논의도 모두 이렇게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개발 단위의 변화를 반영하며 주장, 뒷받침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3) 글로벌 문제로서 개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개발,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발과 더불어 오늘날 개발 담론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 문제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이라 하겠다. 전통적으로 ‘개발’ 문제는 국내 문제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그 해결도 개별 국가의 몫이라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도국의 거버넌스 문제는 공여국들이 자주 지적하는 원조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도국 내의 여러 정치경제 문제 특히 국가와 거버넌스의 실패와 취약성의 문제와 함께 빈곤과 저개발이

9) 물론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우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전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 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보다 균등한 부의 배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센(2004)은 정치적 자유를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자 수단으로 보았다.

10) 예를 들어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군은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이유로 자국 국민을 살상하기도 한다. 실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비단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세계화의 팽창과 함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 논의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질서 혹은 제도로 묶여 있으며 빈곤의 원인은 세계경제질서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도 전 세계가 나누어 부담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박성우, 2016).

이와 같이 빈곤과 저개발의 원인을 해당 국가의 국내적 차원만이 아닌 세계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찾는 시각에 따르면 당연히 저개발 문제의 해결 또한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개발협력, 특히 글로벌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원조의 증대에 기여해 왔다 하겠다.

IV.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주요 특징

아래 <표 1>은 시기별 국제개발협력의 변천사를 시기별 주요 공여기관과 원조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이끌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와 UN, 세계은행 및 IMF를 비롯한 다자원조기구의 역할이 증대 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 NGOs와 비 DAC 공여국의 역할 강화, 그리고 남남협력의 증가가 특기할 만하다.

<표 1> 국제개발협력 변천사 - 공여기관과 주요 원조목표

시기	지배적 혹은 부상하는 공여 기관	공여기관의 주요 원조목표
1940-1950년대	• 미국 • UN 설립 • 브레튼 우즈(Breton Woods) 체제 설립	• 안보목적 • 반(反) 공산주의 • 재건
1960-1970년대	• 유엔이 본격적으로 국제개발 논의의 중심점 역할 시작 • 1961년, OECD DAC 창설; 주요 공여국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부상 • 다자공여기관 확대 (특히 WB와 IMF)	빈곤 감소, 재분배 문제,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환경, 교육, 성 평등 문제 등 개도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 해소
1980-1990년대	• IMF/WB	• 국제수지 균형과 예산 균형 • 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잃어 버린 개발의 10년')
1990년대 말 이후	• NGOs • 비 DAC 공여국 부상 • 남남협력 증가	• 빈곤 감소가 다시 개발원조의 주요 목표로 • 선정 (good governance); 민주주의 • UN MDGs •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출처: 김지영(2016)에서 재구성 함.

국제개발협력 레짐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점인 제2차 대전 종료 이후 1950년대 까지 미국이 주도해 온 시기 원조의 주요 목표는 공여국의 안보적 이익 추구였다. 그러다가 서유럽과 국제기구들이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떠오르면서 1960 - 1970년대는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이 원조의 주요목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0-1990년대 초 대부분의 빈곤국이 채무위기를 맞으며 IMF/WB의 금융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빈곤 감소는 거시경제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원조의 목표에 밀리게 된다. (이 시기를 여러 개도국들은 ‘잃어버린 개발의 10년’이라 평가한다). 냉전 종료 후 전체 원조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원조 감소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최빈곤국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국가의 최악의 빈곤 상황이 여러 개발 NGOs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지고 The End of Poverty를 저술한 삭스(Jeffrey A. Sachs)(2005)와 같은 학자 및 원조 활동가의 역할에 힘입어 다시 개도국의 빈곤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로 부상하게 된다.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타파를 주요 원조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의 부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수원국의 선정과 민주주의도 냉전이후 본격적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요소 및 원조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요약하면 제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은 공여국, 특히 서구가 주도해 오던 원조의 역사에서 최근 비 서구 공여국의 등장과 남남협력의 증가에 기반 하여 개발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원조의 목표도 현실주의와 인도주의가 여전히 공존하는 가운데 현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목표로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원조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개발 담론의 변화와 전개 안에서 2016년 SDGs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V. 나가며: SDGs 시대 정책과제

삭스(2015)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시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동시에 글로벌 문제에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를 경제, 사회, 환경, 정치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동시에 세상을 보는 규범적 혹은 윤리적 관점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사

회의 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며, 오늘날의 시민과 미래 세대에 웰빙을 가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규범적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요구한다 (삭스, 2015:34).

이와 같이 이전의 MDGs가 수원국의 극단적인 빈곤 퇴치에 초점을 두었다면 SDGs는 경제 개발, 사회 통합, 그리고 환경의 지속성을 모두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한다. 또한 MDGs가 주로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SDGs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SDGs가 담고 있는 개발에 대한 포괄적, 다차원적 정의 및 이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SDGs와 관련해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은 목표 자체보다는 방법론, 즉 정책과 관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 SDGs 시대 정책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본 결론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국제개발 및 개발협력 담론에 기반을 두어 SDGs 시대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 SDGs 이해 제고

SDGs 시대는 분명 이 전의 경제 성장에만 중점을 둔, 그리고 MDGs시대의 사회 개발에 주로 초점을 두고 빈곤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시대와는 구별 된다. 삭스(2015)가 강조한 바와 같이 SDGs는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는 SDGs의 의미와 이해 제고를 위한 국내 논의를 확산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SDGs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개발에 대한 가치와 이해에 대한 자성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목표 간의 시너지 및 충돌 알아보기

SDGs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 우선 부딪치는 문제는 현재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각 목표들 간에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목표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과 충돌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Koehler, 2015). 이에 따라 SDGs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우선적 정책 과제중 하나는 각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있어 생길 수 있는 충돌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해보는 일일 것이다.

□ 만병통치약(one-size-fits all)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만병통치약적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상황과 정치경제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SDGs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이다. 그러나 이를 도달하는 정책 노선은 국가마다 상이할 것이다. 우리 시대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를 달성하는 길 또한 다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실정과 개발 단계, 그리고 정치경제 구조에 맞는 SDGs의 달성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러 SDGs 중에서 한국의 개발 상황에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할 목표들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MDGs를 모델로 한 이행체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개발 문제를 글로벌 문제로 바라보고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 진 오늘날 목표 17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SDGs 달성의 실행 방법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섉스미스와 맥마이클(Sexsmith and McMichael)(2015)에 의하면 SDGs가 여전히 개별 국가들에게 주로 목표 달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이는 SDGs가 MDGs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저자에 의하면 MDGs는 확실한 근거 없이 국가를 중심 단위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을 취했으며, 개별 국가가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가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었고, 계획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배제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SDGs의 정책 과제를 도출할 때 이와 같은 MDGs의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목표 달성의 주체로서 개별 국가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협력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지영. 2016.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박종희 편.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회평론.
- 박성우. 2016.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박종희 편.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회평론.
- 삭스, 제프리 D. (홍성환 옮김.) 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1세기 북스.
- 윌리엄스, 글린 외. 2014. (손혁상 외. 역. 2016).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발전론(Geographies of Developing Areas: The Global South in a Changing World)」. ㈜푸른길.
- 헤인즈, 제프. 1996. (장성호 역. 2003.) 「위기의 제3세계 정치론(Third World Politics)」. 학문사.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Thomas L.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New York: Anchor Books.
- Gereffi, Gary and Donald L. Wyman ed. 1990. *Manufacturing Miracles: Paths of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lm, Hans-Henrik and Georg Sorensen. 1995. *Whose World Worder?: Uneven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estview Press.
- Koehler, Gabriele. 2015. “Seven Decades of ‘Development’. And Now Wha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7: 733-751.
- _____. 2005. *The End of Poverty: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Time*. New York: Penguin Books.
- Scholte, Jan Aart. 2005. (2nd Edition).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Inc.
- Sexsmith, Kathleen and Philip McMichael. 2015. “Reproducing or Reimagining State-Centered Development?” *Globalizations* 12(4): 581-596.
- Wade, Robert. 1992.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The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발표2]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I. 서론

1990년대 말, 21세기의 시작을 앞두고 선진공여국은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여,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DAC)는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하여 21세기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개발목표를 제안하였고, 이렇게 제안된 OECD DAC의 글로벌 공동의 개발목표는 2001년 세계은행, IMF, UN, OECD와 일부 선진공여국이 모인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하 MDGs)로 발전하게 되었다.¹⁾ 이러한 MDGs가 2015년까지로 종료되었고, 2016년 부터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하 SDGs)가 수행되게 되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1년에 책정된 MDGs의 후계목표로서 2015년 9월의 UN summit에서 채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 목표이다. 이러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MDGs로 남겨진 과제나 새롭게 표면화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17개의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한 SDGs를 공표하였다.²⁾

우리나라는 SDGs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번에 채택된 SDGs는 MDGs에 비해 매우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개발자원, 참여주체, 발전대상,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³⁾

특히 SDGs는 인간,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이것은 보편적 평화의 강화를 추구하

1) 임소진,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 EDCF 이슈페이퍼 Vol.4 No.8, 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수출입은행, 2015.12, 2면.

2) http://www.mofa.go.jp/mofaj/gaiko/oda/about/doukou/page23_000779.html(최종방문일: 2016.10.23.)

3) 유웅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제10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5.10.8, 1면.

고 있다. 즉, 종래 국제사회는 GNP 증대로 대변되는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인간·사회개발 중심의 MDGs를 지나 ‘총체적 발전’⁴⁾을 지향하는 것으로, SDGs가 가지는 핵심정신은 ‘포용(Leave No One Behind)’이며, 과거 개발 목표 및 규범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중심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 성취’를 이야기 했다면,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발전의 이슈를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⁵⁾

이러한 유엔 등에 주도되는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의 개발의제의 역사적 전환(MDGs→SDGs)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를 검토하고, 현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I.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1. MDGs

20세기 인류는 「빈곤」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가 절대적 빈곤 라인이라고 정의한 1일 1명당 1(미)달러의 소비지출액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은 20세기말 기준으로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16억 2500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상(34.2%)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다.⁶⁾

이에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유엔 밀레니엄서밋(UN Millennium summit)에서 21세기의 국제사회의 목표로서,⁷⁾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세계 만들기에의 협력을 약속하는 MDGs를 채택하였고, 이 선언에서는 인간 개발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달성 등의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 및 그 진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60개의 지표가 정해져 있었다.⁸⁾ MDGs의 달성정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빈곤 퇴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개별단위로 보면, 분야 및 지역에 따라 그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⁹⁾ 또한 MDGs목표의 범위중 능력 강화나 인권,

4)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 통합을 의미한다[이재완,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 전략 세미나, 국회SDGs포럼 외, 2015.10.8., 13면].

5) 한재광, “SDGs 이행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 전략 세미나, 국회SDGs포럼 외, 2015.10.8., 152면.

6) 大坪 滋, “國際開發協力をめぐる新たな展開”, 現代社会へのとびら, 2015年度 2学期号, 帝国書院, 2015, 11面.

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18 September 2000.

8) 新井 美希, 近年の國際開発目標をめぐる動向—MDGs から2030 アジェンダへ—, 調査と情報—ISSUE BRIEF— NUMBER 898, 国立国会図書館, 2016.3.10., 1面.

9)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p.4.

민주주의,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등에 대한 범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⁰⁾

[참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 목표¹¹⁾

목 표	세부 목표	
1. 극도의 가난과 기아 근절	A. 1990년~2015년 간 하루 소득 1달러 이하 인구 비율 반감 B. 여자와 청년층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호한 일자리 보장 C.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년 기준 50% 감소	
	성과	• 극도의 빈곤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목표1에 관해서는 큰 성과. • A는 2010년 시점에서 이미 달성. 개발도상국은 1990년에 인구의 47%가 1일 1.25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22%, 2015년에는 14%까지 감소. • 1990년부터 2015년간 10억명 이상이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탈피. • 개발도상 지역에서의 영양 불량 인구의 비율은 거의 반감.
	과제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인구의 41%가, 세계에서는 약 8억명이 아직도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음.
2. 보편적인 기본 교육 성취	A. 2015년까지 모든 지역의 남녀를 불문한 아동들이 기본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성과	• 개발도상국에서의 순수취학률은 2000년 83%에서 2015년 91%로 개선. • 타지역에 비해 지연을 취하고 있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순수취학률을 최고로 개선하여, 1990년 52%에서 2015년 80%가 됨.
	과제	• 모든 아이의 초등교육 수료는 실현되지 않음. • 최빈곤층 세대(하위20%)의 아이는, 최부유층 세대(상위20%) 아이의 4배의 확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음.
3. 남녀평등 증진 및 여권 신장	A.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2005년까지 제거하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제거	
	성과	• 개발도상국 전체로 본 경우,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녀격차 해소 • 남부아시아에서는 1990년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서 74명의 여자가 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남자 100명에 대해 103명의 여자가 통학 • 전체 여성 고용자수에서 차지하는 불안정한 고용의 비율이 13% 감소 • 과거 20년동안 세계의 여성의원 비율 증가
	과제	• 의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5분의 1이며, 여러가지 여성 차별 잔존

10)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trategy Beyond 2015, United Nations, 2012, p.19.

11) 김은정 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53-54면 및 新井 美希, 前掲書, 3-4면 재구성.

목 표	세부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A. 1990년~2015년 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2/3 감소	
	성과	• 세계의 5세 미만의 사망수는 1990년 1,270만명에서 2015년 약 600만명까지 감소. • 세계 전체 사망률은 1,000명당 90명에서 43명으로 감소.
	과제	• 1990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하는 목표 A는 달성되지 않음. • 5세 미만아의 사망률 중 최빈곤층 세대 아이가 최부유층 세대의 아이의 약 2배
5. 모자건강 개선	A.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 B. 모든 임산부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성과	• 임산부 사망률은 1990년 이후 세계에서 45% 감소. • 의료 종사자의 입회하의 출산은 1990년 59%에서 2014년 71%로 상승. • 피임도구 보급률 증가.
	과제	• 목표 5는 MDGs 중에서 가장 목표이행이 늦음 • 1990년 대비 4분의 1의 목표로 한 A는 달성되지 않음. • 개발도상국의 임산부로 바람직한 임산부 검진을 받고 있는 비율은 2014년에 52%이며, 헬스 등의 보편적 액세스는 달성되지 않음.
6.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박멸	A. 2015년까지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환자 수 감소 시작 B. 2010년까지 에이즈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전폭 확대 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발병을 막고 환자수를 줄여나감	
	성과	• HIV 신규감염은 2000년부터 2013년에 걸쳐 약 40% 감소. • 2014년 6월까지 세계에서 1,360만명이 항RNA 종양 바이러스 요법을 받고 있어, 2003년의 80만명에서 큰 수로 증가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620만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에서 벗어났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이에 결핵의 예방, 진단, 치료에 의해 3,700만명의 생명이 구해졌진 것으로 추정됨.
	과제	• 개발도상국의 HIV 감염자 3,150만명 중, 2013년에 항RNA 종양 바이러스 요법을 받은 비율은 36%에 머무른다고 추정.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A.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국가 정책 및 계획과 통합하고, 환경 자원의 상실을 역전시킴 B. 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이고, 2010년까지 상실했을 현저히 줄임 C.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 반감 D. 2020년까지 최소한 1억명의 빈민권 거주자들의 생활 현저히 개선	
	성과	• 개량된 음료수원의 사용 가능한 비율은 1990년 76%에서 2015년 91%로 개선.
	과제	• 개량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 반감은 불달성. • 빈민가 주거자수 자체는 증가 경향에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50%이상 증가하고, 물부족이 세계 인구의 40%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후 변동과 환경 악화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

목 표	세부 목표	
8.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관계 진전	A. 개방된, 규칙에 기초한, 예측가능한 차별이 없는 무역 및 금융 시스템 개발 B. 저개발 국가들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 C.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 포괄적 대처 D. 제약회사들과의 협력하에 개발도상국들에 기본적인 약품 공급 E. 민간 부문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와 통신의 혜택의 배분	
	성과	-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는 2000년부터 2014년간 실질 66% 증가(1352억 달러). - 과거 15년간에 비해 휴대전화의 계약수는 거의 10배가 되었고, 인터넷의 보급율은 2000년 6%에서 2015년 43%까지 증가.
	과제	2014년 기준 OECD 개발위원회(DAC) 멤버국 중 ODA 거출액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목표를 달성한 것은 5개국(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뿐임

2. SDGs

2030 의제는 ①서문, ②정치선언, ③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④실시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⑤진도관리(Follow Up)와 리뷰의 5개로 구성된다. 서문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 분야로서의 5개의 P, 즉 People(인간), Planet(지구), Prosperity(번영), Peace(평화), Partnership(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SDGs는 2030의제의 핵심을 이루는데 MDGs의 미달 부분을 달성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의 3가지 측면을 조화시킨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17개 분야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와 지표라는 3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¹²⁾

[참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³⁾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빈곤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에너지 보급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2) 新井 美希, 前掲書, 6-7면.

13) 김은정 외, 전게서, 56면.

이 경우 세부목표는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에 어느 정도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SDGs는 개발도상국들에만 적용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와는 달리 그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게 된다.¹⁴⁾

3. MDGs와 SDGs 비교

SDGs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지속성」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확대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SDGs는 MDGs에서의 협의의 환경면의 지속성은 인류가 생존하는 「지속적인 지구(환경)의 확보」로 재정의가 되었고, SDGs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이라고 하는 광의의 「지속성」의 확보가 요구되어, 세계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다양성을 내포하면서도, 지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글로벌 인재」인 것을 요구한다.¹⁵⁾ 이하에서는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MDGs와 SDGs 비교¹⁶⁾

대상	내용	
1. 목표수	비교	• MDGs: 8개 목표, 21의 세부 목적, 빈곤타파가 주목적 • SDGs: 17의 목표, 169의 세부목적, 빈곤,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한 지구상 다양한 대응이 주목적
	검토	• 목표의 증가, 복잡화에 의해 이해가 용이하지 않음 • 수치지표를 수반하지 않는 세부목적의 증가로,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마련이 약함 • SDGs는 목표가 공평하고 우선 순위가 부족하여 비용면에서도 비현실적임
2. 발전범위	비교	• MDGs: 주로 개발도상국(특정성) • SDGs: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보편성)
	검토	• 종래 환경 문제에 임하는 것은 선진국이며,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고 하는 구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쌍방이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거나 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과의 구분 자체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
3. 목표치의 설정	비교	• MDGs: 목표가 명확하나, 지역마다의 상황이나 다양성은 감안되지 않아, 지역에 의해 달성도에 차이가 발생. • SDGs: 세계 전체의 달성 목표를 고려하면서, 국가나 지역 수준의 세부목표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임
	검토	• SDGs는 MDGs와 같이 가맹국에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음 • 세계 전체의 수행상황에 대한 검증시스템 필요

14) 김은정 외, 전계서, 56면.

15) 大坪 滋, 전계논문, 13면.

16) 유웅조, 전계서, 2-3면 및 新井 美希, 前掲書, 8-9면 재구성.

대상	내용	
4. 정책 절차	비교	• MDGs: UN 전문가 주도의 아래, TOP-DOWN방식으로 정책 책정됨 • SDGs: 유엔 가맹 각국의 활발한 의견교환 및 비정부 조직(NGO), 민간기업, 시민사회 논의 아래, Bottom-up방식으로 정책 책정됨
	검토	• 다양한 이해기관의 참여에 따른 정책 결정시의 합의방식 및 시간적 비용적 문제
5. 개발자원	비교	• MDGs: 공적개발원조(ODA)가 핵심적인 자원 • SDGs: ODA와 이를 초월한 다양한 개발자원(정부예산뿐만 아니라 국제 및 국내적 공공 및 민간자원 등) 활용
	검토	• 개발자원의 확대에 따른 활용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적 대책 방안의 논의 필요
6. 참여주체와 국내외 거버넌스	비교	• MDGs: OECD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 소위 선진국 중심,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전문제를 고민하는 '남-북 협력'이 주요한 형태 • SDGs: SDGs는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아랍지역 국가 등의 기여를 포괄하여 '남-북 협력' 및 '남-남 협력'의 형태도 포괄
	검토	• 국내적 차원에서는 PPP 참여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 협력'과 '남-남 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한 개발자원과 연관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III. SDGs와 우리나라 법제동향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동향을 보면 많은 내용면에서 SDGs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현황

첫째 법률명에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법률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하위법률, 「지속가능발전법」 및 하위법률 등이 있다.

둘째, 법률 및 하위법률의 조문명에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법률로는 다음과 같다.

	법령명	조문명
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2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와의 협의 등
3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4	국토기본법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법령명	조문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독도 지속가능 이용위원회
8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10		제9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12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15	산림기본법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6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장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8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장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장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21	산업발전법	제16조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22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23		제19조 지속가능 경영 종합시책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26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27		제50조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29		제39조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3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31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2		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33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34		제16조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35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37		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38		제4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39		제13조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40		제3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41		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42	지속가능발전법	제4조 제2장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등
43		제13조 지속가능 발전지표 및 지속가능 성 평가
44		제15조 제4장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45		제15조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설치
46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지속가능 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47		제2조 제2장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 등
48		제11조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 성 평가
49		제13조 제4장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50		제13조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51		제22조 지속가능 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52		제23조 지속가능 발전 교육 등

셋째, 현행 법률은 아니지만 입법안으로 나온 법률 중에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물관리기본법안(2015.11.30.발의, 2016.5.29. 임기만료 폐기)」이 있었다. 이 법안에서는 효율적인 수자원의 배분·관리·이용과 함께 환경생태유량의 고려 등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입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 법안 제29조(국제 물관리 협력의 추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1) 정의규정

SDGs의 핵심사항인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국내의 법률 중 정의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중 지속가능과 관련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이 있다.

	법령명	조문 내용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기본법	제3조제1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조문 내용
6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8호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5호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9	지속가능발전법	• 제2조1호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제2호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 법률들에서 규정한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 창출을 통한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SDGs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2) 국제교류협력 사항

법률명에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법률 또는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명	조문 내용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1. ~ 11. (생략)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 14.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명	조문 내용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2015.11.30.발의, 2016.5.29. 임기만료 폐기))	제29조(국제 물관리 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나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이 국제규범의 조화로운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국제학술교류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입법방향

SDGs수용과 관련하여 국제테러, 핵문제, 국제경제정책, 에너지, 환경(기후변화), 인구문제, 음식문제, 전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논의가 대두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법률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되는 것과 SDGs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제조건

(1) SDGs 이행목표 수용방향 고려

SDGs는 그 목표가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한 사항도 전 방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SDGs를 한번에 모두 우리나라의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SDGs와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는 SDGs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할 사항과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SDGs상의 목표를 우리입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①민의수렴, ②정책결정과정, ③갈등해결과 통합, ④정치과정이라는 입법과정의 기능¹⁷⁾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DGs상의 목표를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의 내용적 정당성¹⁸⁾ 및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가 조화롭도록 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이행체계 고려

우리나라는 SDGs의 국내외 이행체계를 구분하면서도 통합해야 하고, 개발재원의 경우에도 기존 ODA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공 및 민간재원이 활용되어야 함으로 자원별로 구분된 체계와 동시에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입법화하여,¹⁹⁾ SDGs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책입안의 필요성,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 및 시기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²⁰⁾

2. 지속가능발전법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전환

지속가능발전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2호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17)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6, 16면.

18)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 여부, 관계 법익의 균형성,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 입법내용의 정당성은 수범자인 국민이 법률을 신뢰하고 따르는 전제가 된다[국회법제실, 전거서, 37면].

19) 유웅조, 전거서, 3-4면.

20) 국회법제실, 전거서, 36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²¹⁾ 이로써 우리나라는 리우선언의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국내에서의 실행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인 (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국내법에 수용하게 되었다.²²⁾ 이 기본법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구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구법 제4조 및 제5조), 국가이행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구법 제6조 및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구법 제13조 및 제14조),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구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구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1월 13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률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구법 제3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제4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제5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제6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제12조) 등이 삭제되었다.

(2) SDGs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의 검토

1) 기본법으로의 재전환 필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률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더 광범위하고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의 목적적 측면에서 보아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반하여

2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0019&ancYd=20070803&ancNo=08612&efYd=200802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22) 김은정 외, 전거서, 57면.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도식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재전환하는 경우에 이 기본법의 성격²³⁾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 기본법이 아닌 정책의 방향과 실제적인 집행권한을 가질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기본법으로 전환한다면 SDGs의 이행을 개별법의 전체적인 수정이 아닌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지속가능발전법은 다른 개별법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고, 지속가능발전법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SDGs의 목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녹색성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사회전체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더할 필요가 있다.

3) 임의규정의 강행규정화

지속가능발전법은 많은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 제체의 수행에 있어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조항들을 부활하고, 개별적인 조항들을 분석하여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SDGs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입법평가를 통한 새로운 개별규정의 도입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 SDGs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즉, SDGs의 범위의 광범위한 수용과 수용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법에 담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면 각 개별법 단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

23) 기본법은 헌법과 개별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9면).

도록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의 수행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 ODA의 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²⁴⁾

2011년 7월 25일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이 있었다.²⁵⁾ 그리고 2013년 7월 16일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²⁶⁾ 또한 2014년 10월 15일에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²⁷⁾

2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2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231&ancYd=20110725&ancNo=10919&efYd=201110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2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05&ancYd=20130716&ancNo=11889&efYd=201307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최종방문일: 2016.10.24.)

2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744&ancYd=20141015&ancNo=12767&efYd=20150416&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2) SDGs의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검토

1) 목적조항에 SDGs 명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SDGs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이라는 사항을 목적조항에 명기하여 SDGs의 수행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정부개발원조대강(政府開発援助大綱) 목적에서 “극도의 빈곤, 기아, 난민, 재해 등의 인도적 문제, 환경이나 물 등의 지구적 규모의 문제는 국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여 지속가능이라는 SDGs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다른 법률간의 상충이 되는 경우에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SDGs가 종래 개발도상국의 위주에서 선진국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계는 지속가능발전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관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방향성 설정 등을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민간영역의 참여의 확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7조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제7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민간영역이 아닌 관주도의 구성원으로 되는 현황이다. 이에 대해서 SDGs수행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의 전문가의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위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자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이 BOTTOM-UP방식의 의사결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전문인력 양성 규정의 명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강행규정화 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의 자원의 경제적·물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예산 등의 문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이해서이다.

5) 모니터링과 평가제도의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의 통일화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SDGs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2016년부터는 국제사회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전범위적인 지속가능개발의 균형적 통합 또는 총체적 발전이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DGs의 목표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종래 MDGs가 특정되고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 목표달성이 목적이었다면,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 범위에서 사회, 경제 등 광범위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측면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SDGs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SDGs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률을 한번에 전부 검토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정도에서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SDGs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법제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SDGs의 목표와 일정한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분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SDGs의 수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향성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개별규정에 있어서 SDGs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개별 법률단위에서 SDGs의 목표와 상응할 수 있는 법제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6.
- 김은정 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유용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이슈와 논점 제10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5.10.8.
- 임소진,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 EDCF 이슈페이퍼 Vol.4 No.8, 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수출입은행, 2015.12.
- 이재완,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증발전 목표(SDGs)와 이행 전략 세미나, 국회SDGs포럼 외, 2015.10.8.
- 한재광, “SDGs 이행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증발전목표(SDGs)와 이행 전략 세미나, 국회SDGs포럼 외, 2015.10.8.
-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United Nations, 2015.
-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trategy Beyond 2015, United Nations, 2012.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18 September 2000.
- 新井 美希, 近年の国際開発目標をめぐる動向—MDGs から2030 アジェンダへ—, 調査と情報—ISSUE BRIEF— NUMBER 898, 国立国会図書館, 2016.3.10.
- 大坪 滋, “国際開発協力をめぐる新たな展開”, 現代社会へのとびら, 2015年度 2学期号, 帝国書院, 2015.
- http://www.mofa.go.jp/mofaj/gaiko/oda/about/doukou/page23_000779.html(최종방문일: 2016.10.23.)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0019&ancYd=20070803&ancNo=08612&efYd=200802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231&ancYd=20110725&ancNo=10919&ef>

Yd=201110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05&ancYd=20130716&ancNo=11889&efYd=201307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최종방문일:
2016.10.2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744&ancYd=20141015&ancNo=12767&efYd=20150416&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최종방문일:
2016.10.24.)

[발표3]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월드비전 옹호팀장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남상은 KoFID 정책위원장·월드비전 옹호팀장

1. SDGs 의제 형성과정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참여

-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고위급 및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MDGs와는 달리 SDGs는 3년여 간 다각적인 논의구조를 형성하여 포괄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완성됨.
-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짐.
-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시민사회는 포괄적 시민사회연대체로 Beyond2015 및 Action2015를 출범, SDGs 의제형성 과정에 참여함.
- 한국의 개발협력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를 중심으로 Beyond2015 Korea 및 Action2015 Korea 등의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출범함.
- Beyond2015 Korea 및 Action2015 Korea를 중심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인식제고, 공개토론회, 정부와의 정책대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국제 논의과정에서의 참여 등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함.
-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수렴된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Post-2015 개발의제 대한 한국 개발협력시민사회의 제안사항을 마련함.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5대 핵심제안〉

2013년 2월 20일, Beyond2015 Korea

①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모색

Post-2015 개발의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인권, 평화/안보, 성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② 불평등 문제를 개발 핵심의제로 선정

Post-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개발재원의 혁신적인 방안 모색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보장을 위해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지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자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④ 책무성 메커니즘의 제도화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⑤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책무성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 Beyond2015 Korea는 위의 제안사항을 Post-2015 개발의제 유엔 고위급패널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2013년)하는 것을 시작으로 SDGs 공개작업반(OWG) 프로세스, 정부 간 협상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공식, 비공식 정책대화를 통해 SDGs 의제에 영향을 끼침.

2. SDGs 의제와 시민사회

-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SDGs 결과문서(A/RES/70/1)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역할과 기여의 중요성을 의제 형성 및 이행의 과정과 관련하여 10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음.
- SDGs는 의제는 야심차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 17번에 제시되어 있음.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17.16 Enhanc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plemented by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at mobilize and share knowledge, expertise,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17 Encourage and promote effective public,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resourcing strategies of partnerships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 공공-민간 ·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 SDGs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와 검토(A/RES/70/1, Follow Up and Review, para 72~91)를 위한 주요 원칙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Follow-up and Review (para 72~91) 후속조치와 검토

74. Follow-up and review processes at all levels wi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d) They will be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for all people and will support reporting by all relevant stakeholders.

모든 사람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거칠 것

(e) They will be people-centred, gender-sensitive, respect human rights and have a particular focus on the poorest, most vulnerable and those furthest behind.
사람 중심의, 성인지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하고 발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

National level

78. We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develop as soon as practicable ambitious national responses to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is Agenda. These can support the transi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build on existing planning instruments, such as nationa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s appropriate.

79. We also encourage Member States to conduct **regular and inclusive reviews of progress** at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which are country-led and country-driven. Such reviews should draw on contributions from indigenous peoples,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in lin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policies and priorities. National parliaments as well as other institutions can also support these processes.

회원국은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검토과정을 주도...시민사회....의 기여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될 수 있음.
 - SDGs 달성에 직접적 기여 (직접사업을 통한 기여)
 - 단체의 국제개발 현장사업을 통한 SDG 달성에 기여
 - 기업 CSR, 정부와 민관협력, PPP 등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SDGs에 기여
 - 정부의 국제개발협력분야 SDGs 이행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
 - 국제적 차원의 SDG 이행평가 과정에 참여
 - 정부 ODA를 통한 SDGs 이행 및 달성 평가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 대안적 지표 개발 및 독립적 시민사회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3. SDGs 이행과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 현황

(1)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준비 현황

- SDGs 출범 이후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별 단체차원에서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SDGs 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을 위한 거버넌스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협의체/연대체인 KCOC와 KoFID 등도 ‘SDG 17.17’과 ‘SDGs 후속조치 및 검토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의 SDGs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
-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SDGs 이행과 모니터링 등 애드보커시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네트워크인 A4SD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년 4월 발족, IFP, GCAP, CIVICUS 등의 중심이 되어 구축), Together2030 (2015년 12월 발족, Beyond2015, Climate Action Network,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중심으로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 각 목표별로는 Bridge47(Goal4.7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TAP(Goal 16&17,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for 2030 Agenda)에 참여하여 정보공유와 협력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SDGs가 보편적 개발의제인 만큼 개발협력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내이슈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포괄적 연대활동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2)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현황

- 2016년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앞두고 국제 및 국내시민사회의 포괄적 참여 네트워크인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 시민넷)’를 구성하여 한국 정부의 자발적국별보고(NVR) 과정에 공동 대응한 바 있음.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포함한 ‘SDGs 시민넷’은 자발적 국별보고서 제출 전 2회에 걸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 진행하였으며, KoFID는 다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음.
 - ①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 ②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SDGs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
 - ③ 개발개원을 포함한 SDGs 이행수단을 마련할 것
 - ④ 정부의 본격적인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 이외에도 한국 시민사회는 HLPF 대응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진행함²⁸⁾
 - HLPF 대응을 위한 아웃리치팀 구성
 - SDGs 기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 7월 HLPF 기간 중 사이드 이벤트 개최 (SDG16, SDG4.7 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 SDGs 이행과 HLPF의 절차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의견서 함께 제출
 - SDGs 대안적 지표 설정과 독립보고서 발간 필요성 논의 등
- HLPF 이후 지난 9월 SDG 국내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정부간 간담회를 통해 SDGs 국내 이행과제 및 이행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함

4. 개발협력분야 SDGs 효과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제언

(1)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과제와 제언

- SDGs의 정신과 목표, 특히 Leave no one behind의 실현을 위한 국제 개발사업의 전략 및 계획 수립 과제
- 민관협력, 기업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개발사업 모델 시도
- 개도국 정부의 SDGs 이행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도국 내 시민사회의 SDGs 이행 역량강화에 기여
- SDGs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국회, 정부, 언론 등과의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에의 정치적 의지 제고에 기여
- 정부, 국제기구 등의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애드보커시 강화
-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시민운동 확산에 기여

(2)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적 과제와 제언

28) 한국 정부의 UN SDG 국내외이행전략, '시민사회의 역할' 발표문, 2016년 5월 12일, 이성훈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SDG 17.17)
- SDGs 이행을 위한 ODA 통합전략과 이행계획 마련
- 투명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SDGs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 특히 개도국 내 가장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포괄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구축
- SDGs와 국제개발협력 분야 다양한 국제 프레임워크와 이행 메커니즘 간의 조화와 시너지 도모

종합토론

장혜영 교수(중앙대학교)

김성규 교수(서울대학교)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토론 1

유엔 SDGs 입법세미나 토론문

장혜영 교수(중앙대학교)

Post-2015 개발의제로 SDGs 확정 이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최종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한 SDGs로 확정되었다. SDGs는 2015년 종료된 MDGs에 비해 포괄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방향이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SDGs는 4가지 기본 원칙 속에 진행 중인데 Universality, Sustainability, Leave no one behind, participation의 4원칙은 이후 SDGs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의 기본 방침으로 기능한다. 특히 SDGs는 과거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던 MDGs와 달리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개발을 위한 의제로 구성되었다.

SDGs는 17개 목표의 광범위함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공여국 및 수원국을 아우르는 보편성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특히 MDGs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준 정책 절차가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SDGs의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각 국가의 SDGs 관련 정책결정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SDGs에 대한 고려 중 참여주체와 국내외 거버넌스 이슈는 MDGs의 global partnership의 확장형으로 남-북 협력 뿐만 아니라, 남-남 협력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내의 효과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SDGs 17개 목표는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한 부분을 다룬 측면이 두드러지는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기후변화, 물, 해양, 육상 생태계 등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체적 환경 이슈들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이행은 분명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국제환경 이슈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SDG의 국내 이행의 복합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SDGs는 또한 MDGs의 8번째 목표였던 global partnership을 확장하여 최빈국 및 개도국을

돕기 위하여 정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등의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여국 내의 이행기관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또한 시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를 통한 SDGs의 효율적 이행 분야도 주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 최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정책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나타나며, 이는 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SDGs의 다양한 목표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집행만으로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SDG에 관한 공여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만큼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토론 2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입법과제 <토론문>

김성규 교수(서울대학교)

□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 SDGs 국내 이행관련 우리나라 법제 동향을 분석하면서 많은 내용에서 SDGs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 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 창출을 통한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
- 그런데 SDGs에서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나라 현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는 비교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SDGs 에서 표방된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에서의 지속가능성과는 다른 맥락의 개념일 수 있음.
- 또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률 간 상위개념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 법률의 목적적 측면의 상위개념 논의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임의 변경된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법 vs. 지속가능기본법 → 기본법으로의 재 전환 필요성에 대한 동의.
- 정부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경제와 사회분야의 지표들이 아직 미흡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됨. 이는 경제와 사회분야의 지표가 지속성, 포용성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설정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통한 포용적 혁신경제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경제 섹터 내 환경적 요소의 개선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당 지표도 그에 맞게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됨.
- SDGs의 국내 이행 노력은 국제 규범과의 조응성에 바탕을 둔 관련 국내 규범 및 법률 분석에서 출발 함. 왜냐하면 국내 수준에서 어떤 목표를 우선 이행목표로 선정하는가와 이에

대한 관련 법률, 이행전략의 마련, 후속 이행 조치는 국내 이행 주체의 특수성, 관련 정책 및 국가 발전 계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

- 특히, SDG 8, 9 번에서 언급되고 있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청년 실업과 decent work 창출문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 이행문제, 이민노동자 노동의 질과 인권 문제 등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이며, 따라서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정부 해당부처의 SDGs 이행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관련 규범 및 법률적 보완이 필요 함. 예를 들어 고용정책관련 해당 부처는 노동시장 상황,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의 노동기회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실제 집행, 효과성과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함. 이는 해당 정책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되는 바, 특히 SDG 8번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점이 주지되어야 할 것임.

□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 SDGs 의제 형성과정에 시민사회 연대체인 Beyond 2015 Korea 및 Action 2015 Korea 가 참여한 것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소외 그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5대 핵심제안(2013), 특히 불평등 문제를 개발 핵심의제로 선정, 인권분야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제도 도입, 인권, 성 평등, 양질의 일자리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임.
-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① SDGs 달성에 직접기여(직접 사업을 통해)하는 방법과 ② SDGs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 기능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음. ← 우리나라 시민사회 진영의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 기능의 한계성 존재. (←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 네트워크의 상시적 확보 문제)
- SDGs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포괄적 연대활동을 위한 기회의 모색은 바람직해 보이나,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함. ← 2016년 HLPF 이전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인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구성, 한국정부의 자발적국별보고

(NVR)과정에 공동 대응함.

- 국제개발사업의 전략 및 계획 수립, 혁신적 개발사업 모델 시도,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여, SDGs 이행의 정치적 의지제고,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애드보커시 강화 등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주요 과제 및 제언을 함.
- 그런데 언급된 과제를 효과성과 확산성을 기준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설정, 혹은 직접 사업에서의 과제와 모니터링 및 애드보커시 관련 과제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됨. 이는 시민사회 영역의 국제 SDGs 이행 담론 형성과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국내 이행 관련 각 세부 목표와 측정지표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내 공유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토론 3

유엔 SDG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1. 들어가며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목표로 했던 단순한 MDG를 넘어, SDG는 ‘전세계’가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SDG시대의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법」)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SDG 달성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법제(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가 잘 정비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제내용이 개도국과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박광동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미 지속가능발전 및 국제개발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관련법제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법치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MDG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의 결여이며 이로 인해 SDG의 16번째 목표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6번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지속가능발전 및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

가. 지속가능발전의 헌법적 기초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인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헌법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발전과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5조 제1항),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제35조 제2항), 국가의 여성·노인·청소년의 복지 증진의무(제35조 제3항), 모성보호에 관한 조항(제36조 제2항), 재판청구권(제27조), 법치국가와 관련된 조항(제37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제119조¹⁾의 경제조항,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규정(제122조), 지역경제 육성의무에 관한 규정(제123조 제2항),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규정(제123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보존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5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위 규정들을 보면 유엔의 SDG 17가지 목표의 대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기초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헌법상 기본원리, 기본권들은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과 환경의 대립이 문제된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입법목적에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선별적, 부분적, 예외적 이용제한의 수단만을 선택하여서는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같은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1)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이 사건 특조법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등)

비록 위 결정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이 논의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입법적인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원리들을 고려하면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헌법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협력대상국(개도국)과 국제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도 협력대상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제개발협력의 헌법적 기초²⁾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서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가목표인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발전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국제개발협력을 우리나라의 제도나 경험의 ‘수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헌법에서는 ‘수출’이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헌법 제125조에서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대외무역의 육성이라고 할 때에는 수출진흥도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수출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때에는 제도나 경험의 수출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25조를 제도나 경험수출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이 부분은 이성환/김대인/배미란/김효영, 법제수출의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 최종연구용역보고서, 법령정보원, 2012, 7, 56-57면을 기본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육성에 관한 헌법 제125조를 제도나 경험수출의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5조는 제9장 경제조항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제도나 경험수출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헌법 제125조를 제도나 경험수출의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도나 경험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진출의 확대라는 목적을 사실상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정책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ODA의 각종 평가 절차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법치주의의 개념

가. 다양한 법치주의의 개념³⁾

북한의 법치주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래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이 객관적인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구체적으로 국가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직접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소급입법금지), 제75조(위임입법의 제한), 제103조(사법권의 독립) 등을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오토 마이에에 의해서 체계화된 세 가지의 원리인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의 우위, ③ 법률의 유보를 든다. 그런데 법률의 실질적 내용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행정권의 발동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목적 실현의 형식, 절차만이 문제가 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으로는 ①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3) 이 부분은 김대인,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법치주의의 개념”,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2010을 기본토대로 한 것이다.

의 법규창조력, ② 합헌적 법률의 우위, ③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등을 들고 있다.⁴⁾

헌법재판소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로 독일공법사를 배경으로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소개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을 영미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eerenboom은 ‘연한 법치주의’(thin rule of law)와 ‘진한 법치주의’(thick rule of law)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⁵⁾ 여기서 ‘연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진한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한 법치주의’(thin 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형식적 또는 수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의 법시스템이 민주주의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법체계로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특질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한 민주주의의 내용으로는 행정권력의 적절한 제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⁶⁾

- 어느 기구가 법을 제정하는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 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 법은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접근가능해야 한다.
- 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은 특정인을 상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같게 취급해야 한다.
- 법은 비교적 분명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며,

4)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2013, pp. 27-28,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16, pp. 13-19 등 참조.

5) Randall Peerenboom, “Varieties of Rule of Law: an Introduction and Provisional Conclusion”, in: Randall Peerenboom, ed.,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Routledge, 2004, p. 2 참조. 이를 정태욱 교수는 ‘협의의 법치주의’, ‘광의의 법치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다. 정태욱, “북한의 법치주의론과 그 발전방향”, 아세아여성법학 제9호, 2006 참조.

6) Randall Peerenboom, 앞의 글, p. 2~3 참조.

일반적으로 장래효를 가져야 하고 소급효를 가져서는 안 된다.

- 법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간격은 비교적 좁아야 한다.
- 법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사람이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연한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어느 나라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위 요소들 상호간에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국가의 법시스템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현저히 결여하게 될 때에는 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⁷⁾

‘진한 법치주의’는 ‘연한 법치주의’에서 출발하기는 하나, 여기에 더해 특정의 경제체제, 정부의 형식, 인권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진한 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등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인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⁸⁾

나. 법치주의의 개념과 국제개발협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관련 국제개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연한 법치주의’는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어느 국가나 추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연한 법치주의와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용이 원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한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통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대상국과 상당한 신뢰가 쌓은 경우에 교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법치주의의 개념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중점협력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관련 국제개발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Randall Peerenboom, 앞의 글, p. 3 참조.

8) Randall Peerenboom, 앞의 글, p. 3 참조.

[제5세션]

유엔 SDGs와 법제교류

사회: 장현식 교수(인천대학교)

발표: 소정수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대용 팀장(한국개발연구원)
강봉준 대표(한아도시연구소)
김남연 변호사(KOICA)

[발표1]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소정수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¹⁾ -

소정수 검사(법무부 국제법무과)

I. 유엔 SDGs와 법제정비 지원

가. 유엔 SDGs와 제도 개선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SDGs는 국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계속하면서도 후속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SDGs는 2000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바탕으로 MDGs가 추구해 온 빈곤의 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MDGs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목표를 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DGs 중 목표 16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 있어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 at all levels)*’을 목표의 하나로 명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목표 17번 중 세부목표 9번은 ‘개발도상국이 모든 SDGs의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계획을

1) 본 발표문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 국제적 지원의 강화(Enhance international support for implementing effective and targeted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to support national plans to implement a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제도 구축 과정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법제정비 지원의 의의 및 SDGs와의 관련성

법제정비 지원(legal technical assistance)이란 특정 국가의 법과 제도가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대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협력대상국 법제의 정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다시금 연구 및 검토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²⁾ 우리와 개발도상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도 구축 및 이에 대한 국제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로 규정한 SDGs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권오승, 「법제정비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 아세아여성법학 13호(2010), pp. 141-142

II. 법무부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 현황

법무부는 법제정비 지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원조효과가 크며, 한국전쟁 이후 최빈곤국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의 법과 제도 구축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일찍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뒤늦게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가능케 한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그 사업 영역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무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 증권법제 정비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라오스에 대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라오스 증권거래소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증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증권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공동으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라오스에 진출해 있던 법무법인 지평에 증권법제 정비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우리나라와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증권감독원 관계자들과 증권법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라오스 자본시장 발전 수준과 경제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증권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라오스에서 증권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 사업은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법이 제정·시행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증권법의 제정·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둔 후에도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을 통하여 라오스 증권거래소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가입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2015년에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라오스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법무부에서는 라오스 외에도 한국거래소가 진출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도 증권법

제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성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5년 6월 법무부의 자문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증권시장법이 발효되기도 하였다.

나. 중재법제 정비 지원

중재는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중재제도의 정비는 분쟁해결의 간이화·신속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 그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중재법제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 반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종 UNCITRAL 협약과 규범 등의 전파, 법제정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UNCITRAL의 유일한 지역사무소인 UNCITRAL 아태사무소가 2012년 1월 인천 송도에 설립됨에 따라 법무부는 UNCITRAL 아태사무소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재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미얀마, 2013년에는 몽골에 대한 중재법 현대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라오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라오스 중재법에 대한 분석 및 운용 현황, UNCITRAL 모델법의 반영 정도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과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 중재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라오스 법무부에서 추천한 중재법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라오스 중재법 운용 현황 등을 청취하기도 하였는데 라오스 전문가들과의 회의 결과를 연구용역 결과물에 반영해 보다 충실한 결과물 전달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법무부, UNCITRAL 아태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라오스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오스 중재법제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 기타 법제 정비 지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CITRAL 아태사무소는 아태지역에서 UNCITRAL 협약, 모델법 등 각종 규범의 전파, 법제정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15년과 2016년에 UNCITRAL 아태사무소, 파푸아뉴기니 법무부와 공동으로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각종 UNCITRAL 협약(전자상거래, 국제물품매매협약 등), 모델법 등의 도입·채택 지원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하였다. 위 세미나에는 파푸아뉴기니 정

부 관계자 외에도 인근 국가인 피지, 솔로몬군도 등의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의 결과 파푸아뉴기니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 중으로 뉴욕협약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파라과이 법무부에서 투자유치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법제 정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법인 올춘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올해 8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법무부,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투자법제 정비 지원 관련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파라과이 법무부장관 등 파라과이 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파라과이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현지 세미나에서는 법제정비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코트라의 담당자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는 세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정비 사업 외에도 법무부는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에 한국법 관련 자료를 기증하고 한국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한국법센터 개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6개국 9개소에 한국법센터가 개소되어 있다.

법무부에서 한국법센터 개소 사업을 진행한 기관 가운데 중국 연변대, 몽골 국립대는 한국법에 대한 연구 수요가 특히 높은데, 중국 연변대(법학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절반 가까이 되고, 몽골 국립대는 한국 국민대와의 지속적 교류·협력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중국 연변대, 몽골 국립대에 우리나라 대학과 같이 교내 전역에서 법률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로앤비 접속 권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위 대학들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법 관련 도서들을 제공하여 한국법에 대한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III. 법제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과제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그 연혁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대, 한류(韓流)로 인해 증대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학계·실무계의 열의 등을 토대로 협력대상국과의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조 하에 위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더 큰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전문가 및 그에 대한 연구 부족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해외 법제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들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법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선진국들의 법제를 우리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주된 협력대상국인 개발도상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들 법제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문가 역시 부족하여 협력대상국의 법제 및 운용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법제정비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법제정비 지원은 단순히 우리의 법제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의 상황에 맞는 법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대상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로펌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협력대상국의 법제에 대해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고는 있으나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력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실무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도 아울러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내 유관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는 외국 법관 등을 연수과정에 초청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KOICA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에 법관연수센터를 건립하여 판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법제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통해 해외 각국과의 법제교류를 하며 우리의 법제를 외국에 알리고 해외 법제의 동향을 국내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교류를 진행 중이고, 무상원조를 총괄하고 있는 KOICA에서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유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구축 지원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대상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어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각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인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각 기관에서 협력대상국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경험과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기관의 사업에 반영한다면 법제정비 지원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법제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물질적인 지원 사업과는 달리 법제정비 지원 사업과 같은 제도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협력대상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법령의 제·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협력 대상국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협력대상국 내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협력대상국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더 필요하다.

IV. 향후 전망

법무부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상당 부분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 협력대상국에 대한 연구 등은 단기간에 이를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법제정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민·관·학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 이외에도 법제정비 지원 사업 과정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과 연계한 법제정비 지원에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아태사무소의 개소 이래 국제상거래규범의 전파,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국제기구인 UNCITRAL 아태사무소와의 협력은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을 토대로 법제정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대상국에서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적어 협력의 실익이 크다.³⁾

앞으로는 UNCITRAL 아태사무소 외에도 아태지역에서 법제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법제정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법제정비 지원에 관한 선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출입국관리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우리의 선진 IT 기술을 토대로 한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한 시스템의 진출만으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원활한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

3) 권오승,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pp.196-196.

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지원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진출 시 패키지 형태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류(韓流) 열풍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15년 간 국제사회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SDGs에서도 제도의 구축 및 이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부를 포함한 민·관·학 모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발표2]

유엔 SDGs 이행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016. 11. 8. 발표자료

UN SDGs 이행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박광동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CONTENTS

- I.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성과와 국제개발 협력
- II. SDGs의 17대 목표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구사업의 필요성
- III. SDGs의 법제도적 이행과제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1.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성과와 국제개발협력



❖ 한국법제연구원은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연구기관임

- 2000년 초반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인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구축과 아시아 공통의 문제에 대한 법제정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협력을 추진해 왔음
- 지난 10년간 글로벌법제연구사업과 비교법제연구사업을 통하여 국제기구, 선진국의 입법정보와 분석자료가 축적되어 있음
- 국내법제에 대한 분석연구와 입법정책적 방향에 대한 정보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의 신뢰성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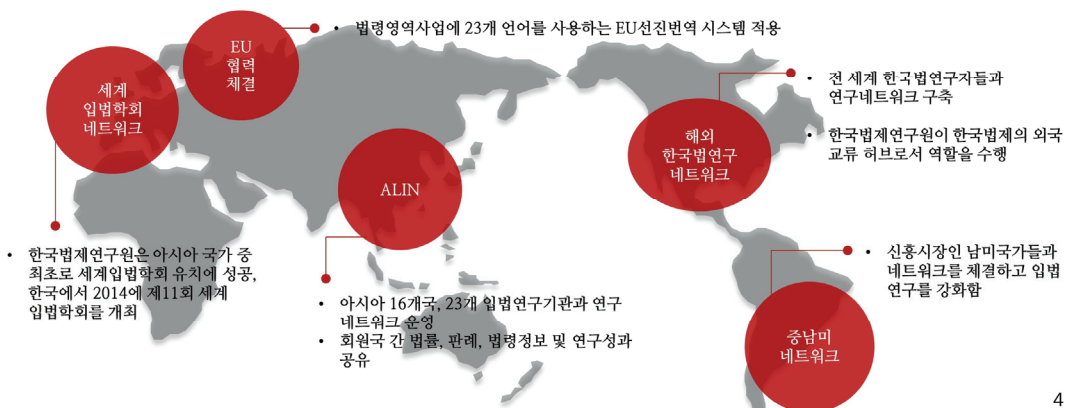
3



1.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성과와 국제개발협력

❖ 연구네트워크의 글로벌화 달성

-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저명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글로벌연구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동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음
- 최근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4



II. SDGs의 17대 목표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구사업의 필요성

지속가능개발목표

-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②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 ③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⑤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 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⑦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⑧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⑨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촉진
- ⑩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경주지 조성
-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 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량,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 ⑮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 ⑯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경매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다함으로 포용적인 제도 구축
- ⑰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SDGs의 17대 목표와 세부과제들은 국제개발협력의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의 감축, 기후변화 조치의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의 통합, 해양쓰레기 등 육지 기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축 등
- 세부과제들의 대부분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과제들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국내 입법정책적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을 통하여 SDGs의 국내 이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입법적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5



II. SDGs의 17대 목표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구사업의 필요성

❖ SDGs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모니터링

- SDGs의 이행성과 모니터링 자료,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와 데이터 보고 메커니즘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필요성 있음

❖ SDGs 기본목표의 포괄성으로 인한 국내의 전략적 방향 수립

- SDGs 기본목표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내용이 방대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최소한 국내적으로는 선택 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방향 수립이 요청되며 이에 따른 연구사업이 필요함



6



Ⅲ. SDGs의 법제도적 이행과제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연구데이터의 공유

-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연구기관으로 국내법제에 대한 연구자료 뿐 아니라 선진국 법제에 대한 연구정보와 분석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이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유되고 있음
- SDGs의 기본목표와 세부과제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국내 이행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글로벌네트워크의 개방과 공유

-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프레임과는 무관하게 구축되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SDGs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SDGs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연구·분석의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네트워크의 프레임을 국제개발협력과 SDGs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7



Ⅲ. SDGs의 법제도적 이행과제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우수 입법전문가의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은 60여명의 법학박사를 전문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전공의 다양성과 분야별 입법전문가로서 활동범위가 광범위함
- 입법전문가로서의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입법화를 지원해 왔으며, 따라서 SDGs의 기본목표와 연계된 국내 입법정책을 선도할 수 있음
-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주력 연구사업인 글로벌연구사업의 연구방향이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SDGs의 국제동향파악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됨

Global KLRI



8



종합토론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대용 팀장(한국개발연구원)

강봉준 대표(한아도시연구소)

김남연 변호사(KOICA)

토론 1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세미나 토론문 -제5세션 유엔 SDGs와 법제교류-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는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및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목표 16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 16에 대한 세부추진대상(target)은 12개로 확정되었으나, 이를 이행하고 측정할 기준이 되는 세부지표(indicator) 설정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 세부목표 9번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능력 구축의 실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번 세션의 주제인 유엔 SDGs와 법제교류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6과 목표 17의 세부목표 9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 16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평화로운 사회는 현 시대의 폭력이 개인이나 국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된 요소이다.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과 제도, 법인이나 정부기관 등 모두가 공정하게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공평하게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개인이 자국의 정부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말한다. 목표 16은 이와 같은 세가지 주요 요소를 구축하여 폭력 감소, 안전 보장, 국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정부 책무성 강화, 공평한 사회서비스 보장, 사법권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접근 및 제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표 16은 12개의 세부추진대상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목표 16의 세부추진대상과 UNSD가 제안한 ‘최종지표목록’(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이다.

〈UN SDGs 목표 16과 최종지표목록〉

목표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진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수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최종지표
16.1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과 관련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1.1 인구 10만 명 당 고의살인의 희생자 수(성별, 나이 별) 16.1.2 인구 10만 명 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성별, 나이, 원인 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당한 인구의 비율 16.1.4 거주 지역 주위를 혼자 걷는데 안전함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박멸한다.	16.2.1 지난 한 달 동안 양육자로부터 어떠한 육체적 체벌 그리고/또는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1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의 비율 16.2.2 인구 10만 명 당 인신매매 희생자 수(성별, 나이 및 착취 형태 별) 16.2.3 18세 이하에 성폭력을 당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
16.3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법의 지배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6.3.1 지난 12개월 동안 그들이 겪은 폭력을 권위 있는 기관 또는 다른 공인된 분쟁해결기관에 신고한 폭력피해자의 비율 16.3.2 전체 구금인구의 비율로서 판결 받지 않은 구금인의 비율
16.4 2030년까지 위법한 자금 및 무기의 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박탈된 재산의 회복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근절한다.	16.4.1 유입 및 유출된 불법자금의 흐름의 총 가치(현 미국 달러 기준) 16.4.2 국제 기준과 법적 수단에 따라 보고 및 발견되어 압수된 소형 화기 및 무기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나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5.1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과 접촉하여 뇌물을 제공하였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사람들의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에 접촉하여 뇌물을 제공하였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사업체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유효한 설명책임이 있는 투명성 높은 공공기관을 발전시킨다.	16.6.1 초기 승인을 받은 예산 대비 실제 초기 정부 지출(부문, 예산 항목 등 별) 16.6.2 공적 서비스 경험에서 만족한 인구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가형 및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한다.	16.7.1 국가분포에 비교한 공공기관(국회와 지방의회, 행정서비스 및 사법부)에서의 직위(성별, 나이, 장애인 및 인구 별)의 비율 16.7.2 정책결정이 포괄적이고 책임있다고 믿는 인구의 비율(성별, 나이, 장애 및 인구 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으로의 개발도상국 참가를 확대·강화한다.	16.8.1 국제기구 내 개도국 출신 회원 비율과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출생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분증명을 제공한다.	16.9.1 행정당국에 출생신고된 5세 이하의 아동 비율

세부목표	최종지표
16.10 국내법규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의 공공접근을 확보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기자, 언론관련인, 무역조언원 및 인권 주창자의 살인, 납치, 강제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밝혀진 사례의 수 16.10.2 대중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헌법, 법령 및/또는 정책적 보장을 채택 실시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폭력의 방지와 테러리즘·범죄의 박멸에 관한 모든 수준의 능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국가기관을 강화한다.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준수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16.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비차별적인 법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실시한다.	16.b.1 국제인권법 상 차별조항에 근거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신고한 인구의 비율

〈UN SDGs 목표 17과 우선지표 제안목록〉

목표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시수단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세부목표	최종지표
17.9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능력 구축의 실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17.9.1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원조(남북협력,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포함)의 달러 가치

주) 상기의 표들은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pp.25-27과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2/25, Annex IV: Final list of propo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pp.20-23에서 발췌 번역하여 재구성함.

이와 같은 목표 16과 목표 17.9에서의 세부목표와 최종지표는 법제교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 핵심 요소인 ‘평화로운 사회’, ‘법의 지배’, ‘민주적 거버넌스’를 법제교류의 이슈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목표 16이 가지는 중요성과 상호연관성에 대해 국가 내부적인 동의 및 합의를 보다 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목표 16과 목표 17.9에서의 세부목표와 최종지표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행수단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 2

유엔 SDGs와 법제교류에 대한 토론문

김대용 팀장(한국개발연구원)

“유엔 SDGs 이행과 법무부의 역할”(소정수 검사 작성) 발제문은 유엔 SDGs 측면에서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의의는 물론, 사업현황 및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잘 정리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을 이슈별로 적절히 분석하고 있었다.

본 토론문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통해 현행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발전 및 심화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KSP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근거로 하여 발제문에서 언급되었던 개선과제 및 관련 정책제언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협력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연구 부족

협력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원활한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국에 대한 전문가들이 활발한 해외 법제 연구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KSP 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KSP 국별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나, 한국 발전경험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그동안의 한국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책·제도의 형성 과정, 그 실행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추진되었다. 이러한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그동안 KSP 수요분석, 한국의 비교우위, 협력국의 수요 및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부문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모듈'을 선정하였다. KSP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법령이나 제도 정비 및 수립에 관한 부분을 사례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일부 모듈의 경우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모듈화 주제 중 예금보험제도 수립, 신용보증기금 설립 등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경험 모듈화 연구에도 법령 정비 및 법제 구축 등이 언급되어 있다. 법무부 및 법제처에서 담당하였던 발전경험 모듈화 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부처	모듈화 세부과제	비고
2011	법제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법무부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경험	
2012	조달청	조달행정 법 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구축	
	법제처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관련 법제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또한 올해부터 KSP 사업기획조사 차원에서 국별·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KSP 협력대상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법제정비 지원사업과 연계된 후속작업을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유관기관 간의 교류·협력 불충분

유관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부재 혹은 미흡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각각의 유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목적, 방법론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상호 간의 전후방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KSP 정책 자문 등 유관 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제와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와 반대로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대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 경험을 KSP 사업 등의 유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SP 사업의 입장에서도 법제교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처나 기관이 상시화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KSP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회, 자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KSP는 연도별로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시아, 중남미 대륙 지역별로 과거 KSP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KSP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부관료 등을 대상으로, 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주요이슈를 선정하여 국내외 연구진 및 전문가들이 현안과 KSP 정책자문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세미나는 현지에서 호응이 높은 편이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포털 구축이나 창구, 그리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본 세미나와 같은 자리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법제정비 지원 인력 및 예산 부족

우리나라 법제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협력대상국의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법제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해당 교류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비 지원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 및 인력의 확충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제 전문인력 양성과 병행하여 차세대 법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청년층(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토론 3

유엔 SDGs 이행과정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교류협력 증진 방안 모색

강봉준 대표(한아도시연구소)

1. 현 황

1) 사례 1 해외 정부 발주 사업

□ 베트남 중앙정부: 하노이 수도(Hanoi Capital) 계획

- 베트남의 수도로서 하노이의 정당성 확보 및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한 장기 행정 및 단계별 인프라 조성 계획 수립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 수립 시 해당국 근거법 및 유엔 인간개발지수 목표를 포함한 사회경제 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등의 계획과 연계 과정

2) 사례 2 양자간 지원 사업

□ 코이카(KOICA): 마스터플랜(Master Plan) 사업

-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 지방정부의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한 장기 행재정계획 수립
- 상위계획의 참여를 통하여 하위 부서의 부문별 행정계획 참여 및 단위 입찰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참여

3) 사례 3 다자간 지원 사업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

- 기술지원 사업의 결과로써 수원국의 필수적 요구사항(Needs)을 담은 다수의 사업을 포함

한 선도사업 리스트 작성

- 아시아개발은행 본사 정책(Policy)의 부합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Priority)를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발주

2. 한국의 Smart한 참여 방안

1) 보편적 방안 Long-Term General Strategy

□ 법률: 영문번역 법률의 제공

- 국내: 법령에 대한 영문번역본 작성 및 제공
- 해외: 개발도상국 법령의 공동 영문화 사업 지원
개발도상국 주요 법령의 국문화 사업 추진

2) 특수적 방안 Short-Term Execution Strategy

□ 도시분야: 해외 진출에 유리한 법적경제적 특수 환경의 조성

- 경제자유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 국제자유도시 FIC(Free International City)

□ 도시분야: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프라 기술의 수출

- 무가선 트램(Wireless Tram): 유엔 SDGs 목표에 부합하며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추진하는 그린시티(Green City) 사업의 교통분야 중점 과제
- 한국 무가선 트램: 철도 교통 인프라 분야의 기존 강국인 유럽의 성능 제반을 뛰어넘는 우수한 기술력 확보
- 다자간양자간 지원 사업 및 해외 정부 도시분야 발주 사업 참여시 교통 인프라 계획에 한국 무가선 트램을 반영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유엔 SDGs 목표에 부합하며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여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기술에 대하여 당사국 시장에 거부감 없이 진출할 수 있는 특허권 인정 등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체계 모색

토론 4

김남연 변호사(KOICA)

1. 대한민국의 SDGs 이행전략의 수립

- 2010년 OECD DAC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되었고, MDGs(사회개발 중심 8대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 ODA 정책인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왔음
-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 정부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통합적인 ODA 이행전략 수립 및 사업조정/효과성 제고의 기본틀을 마련함
- 2015.9. UN은 새천년개발목표 MDG(2001-2015)를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2016-2030년 간의 국제사회 새로운 목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¹⁾를 공식채택하였고, 우리나라 ODA 정책 역시 SDGs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2차 국제개발기본계획('16-'20) 마련함

2.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법제교류지원사업 역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전략 및 이행방식을 준수하여 통합적인 지원전략하에 이행되어야 할 것임
-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ODA/내실있는 ODA/함께하는 ODA” 주요추진과제 수립
- [통합적인 ODA]
 - 다수의 시행기관이 ODA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간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 협의채널 혼란, 사후관리 부실 등 부작용 우려
 - 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관계 기관협의회 운영(수시 개최)하여 사업의 조정/심의 및 연계사업 발굴활성화
 - 24개의 중점협력국을 재지정 내지 조정하고, 개별 수원국의 입장과 대한 민국 지원 효

1) 사회개발 이외 경제발전, 환경보존이 추가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제시

과성을 고려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개별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내실있는 ODA]

- 한국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주요추진 4대분야²⁾를 구성한 바, 이에 행정제도/거버넌스 분야가 선정됨

○ [함께하는 ODA]

- 주요 선진공여국 등의 관련 분야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ODA 사업방식의 선진화

3. 구체적인 법제교류지원사업 수립 및 지원방식

- 대한민국의 개발경험 이전을 위한 주요 분야 중 법제교류 지원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거버넌스 분야 포함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기초로 법제교류지원사업 유관분야의 분야별 협의를 통한 전략/사업계획/평가 등을 공유하고, 중복성 방지
- 무상원조집행 전문기관인 KOICA를 ODA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각 부처는 분야별 전문성을 시너지있게 발현(정부부처제안사업/공공협력사업 등)
- 거버넌스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지정한 중점협력국의 법제사법분야에 대한 장기적/포괄적 연구 및 조사를 통한 효과성있는 법제교류사업의 전략마련(일회적 사업이 아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별/지역별 전문화된 전략수립)
- 선진 공여기관의 우수한 법제교류지원사업 내용 연구 및 단계별 공동사업 추진

2) 경제, 사회, 행정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본 자료집에 실린 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추후 수정 보완을 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무단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